

# INVENTION & PATENT

2012 February

02



## [포커스]

“지식재산 강국 元年” 선포,  
21세기형 국가발전 전략 始動

## [Column]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이길 수 있을까?

애플 VS 삼성, 두 거인의 특허 전쟁



# Contents



“지식재산강국 元年”선포,  
21세기형 국가발전 전략 始動

## Column

- 18 애플 VS 삼성, 두 거인의 특허 전쟁
- 23 여기서 잠깐 \_ 책과의 만남, 신규 회원가입사 소개
- 24 특허전쟁은 창과 방패... 특허재산 확보하라
- 29 여기서 잠깐 \_ 특허 Q&A
- 30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이길 수 있을까?
- 33 여기서 잠깐 \_ 발명역사 속으로
- 34 발명과 특허 그리고 기술이전
- 38 2011년 대한민국을 웃겼던 예능 프로그램명, 상표권의 향방은?
- 42 미국 트레이드 드레스와 한국의 지식재산권제도 비교
- 46 여기서 잠깐 \_ 문화산책

## Report

- 48 미국 개정법에 따른 First to File 제도 해설
- 54 상표권의 권리범위(유사여부) 판단
- 61 여기서 잠깐 \_ 독자마당
- 62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 등록제

##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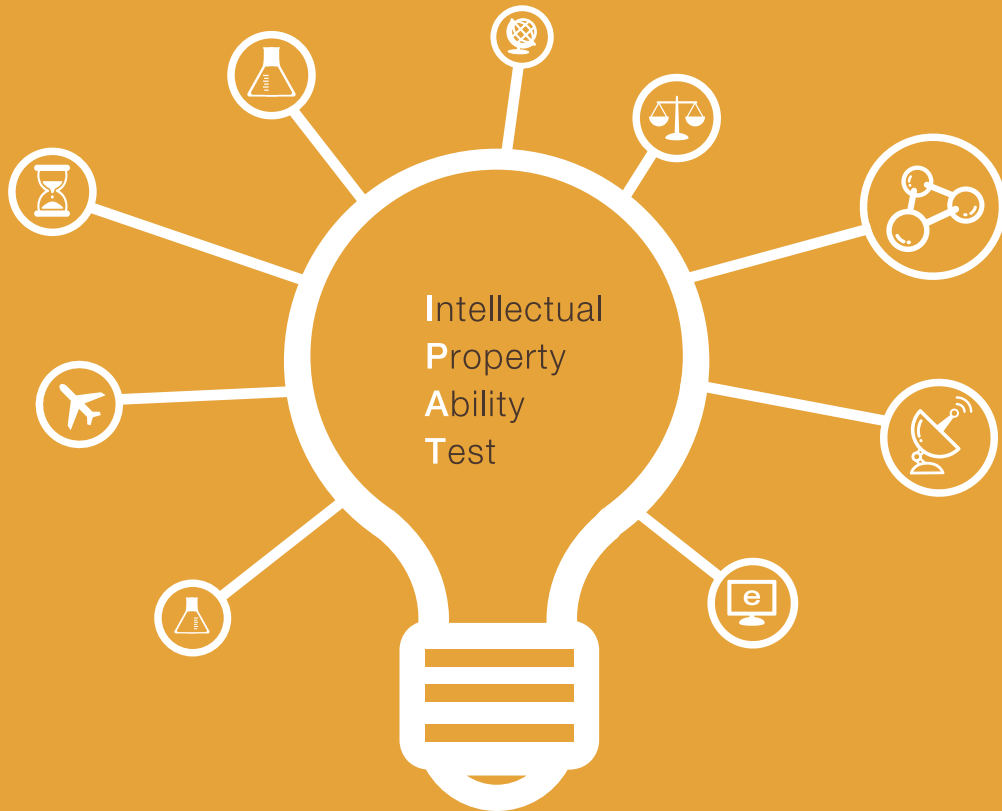
- 70 세계는 지금 세계 지식재산권 동향 소식
- 74 KIPO NEWS 특허청 소식
- 77 KIPA NEWS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 79 건강하게 삽시다 아프고 시린 냉증, 건강의 적신호
- 82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물





# 제 4 회

# 지식재산능력시험



## IPAT 실시요강

### 지식재산능력시험이란?

발명진흥법상 법인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유일한 지식재산능력 공인시험으로 기본지식과 실무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 접수 기간 : 2012년 4월 16일(월) ~ 5월 10일(목)
- 제4회시험 : 2012년 5월 26일(토)
- 대 상 : 지식재산에 관심이 있는 자
- 응 시 료 : 개인 : 20,000원 / 단체 : 시험본부와 협의
- 접수 방법 : www.ipat.or.kr에서 신청
- 시험장소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도시

IP세상!

IPAT으로 준비하세요!

제4회시험  
5월 26일

### | 지식재산능력시험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표준교재 :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

· 지식재산의 정석

○ 온라인교육 : 저자직강

· e-IPAT

○ 오프라인 교육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 문의 : 02) 3459-2777, 2888 \* 자세한 사항은 www.ipat.or.kr에서 확인



▲ 이명박 대통령(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왼쪽에서 두 번째) · 윤종용 민간위원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및 지식재산 청년리더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지식재산 강국 元年”선포, 21세기형 국가발전 전략 始動

우리회 김광림 회장,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리더와의 토론에 참여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 민간위원장 윤종용)는 지난 1월 31일(화), 한국지식재산 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을 개최하고, 산업화시대를 이끌어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62.1월) 50주년을 되돌아보면서, 지식기반 시대에 부응하는 21세기형 국가발전 전략의 시동을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이날 선포식에는 이명박 대통령, 김황식 국무총리(정부위원장), 윤종용 민간위원장, 이수원 특허청장,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 정부 및 민간 위원, 지식재산 청년리더, 부처 및 지자체의 지식재산정책책임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선포식 슬로건인 “지식재산 미래강국, 앞서가는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선포식에 이어, 정부 측의 지식재산 전략 추진방향 보고와 지식재산 청년리더와 함께하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 산업과 문화의 주역인 「지식재산 청년리더」들과 함께 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우리 민족의 창의적 역량과 문화적 자질을 바탕으로, 한 · EU, 한 · 미 FTA 등으로 확대된 경제영토 위에 「지

1)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 · 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 · 평가하는 역할 수행, 공동위원장(국무총리 · 민간위원장),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18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 11. 7. 28일 출범)



▲ 이명박 대통령이 지식재산 청년리더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다.

식재산이라는 꽃」을 활짝 피우는데 다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특허청의 지식재산 전략 추진방향 보고」에서 「특허심사기간의 단축 등 지식재산의 조속한 권리화, 정부 R&D의 특허생산성 제고, 국내의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은 지식재산 청년리더들이 중심이 된 ‘지식재산강국 실현방안’ 토론에서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좋지만, 스티브잡스처럼 다른 사람이 발명한 것을 잘 융합해 산업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우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협조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특허 받은 것 중 대부분 사장되는 것이 많은데, 특허창출·보호·활용이 잘돼서 발명가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우리회가 앞장서서 나아가겠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특허사업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며, “올해 발명의 날 기념식 행사에는 지식재산강국 원년선언의 의미를 담아 국내에 있는 한,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윤종용 민간위원장 및 지식재산 청년리더들이 지식재산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들어 보이며, ‘2012 지식재산 강국 원년’을 선포하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윤종용 민간위원장 및 지식재산 청년리더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2012년도 「올해의 발명왕」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과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 발명가를 선정하여 「올해의 발명왕」으로 추대하고자 하오니 후보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상규모 및 명칭

- 수상규모 : 1명
- 수상명칭 : 「올해의 발명왕」
  - 상금 등 : 포상금 3천만 원 및 부상으로 '발명인의 전당' 헌액, 월계관 수여, 해외 우수발명전시회 참관경비 지원 등

## 시상일정

- 일시 : 2012년 5월 17일(목) (예정)

## 수상상후보자 추천

- 선정대상 : 혁신적인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뛰어난 공적을 세운 자로서 발명가와 국민의 귀감이 되는 자(다만, 발명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추천권자 : 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학회 및 협회,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의 장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수상후보자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른 유관 기관장 또는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심사

- 심사기준 : 발명활동 실적, 업적의 탁월성, 경제사회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심사방법 : 전문심사와 공적심사를 거쳐 수상자 선정

## 추천 접수

- 추천기한 : 2012.1.30(월) ~ 2011.3.12(월) 18:00시까지
- 서류제출방법
  - 준비된 자료는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 요망(접수마감 당일 우편 도착분에 한함)

## 추천서류

- 「올해의 발명왕」 포상 추천서(소정양식) 1부
- 공적조서(소정양식) 및 공적 요약서(소정양식) 각 1부
-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후보자 선정 시 개별 통보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 연 락 처 : Tel 02-3459-2842, Fax 02-3459-2799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우) 135-980
- E-mail : khs3044@kipa.org
- 홈페이지 : <http://www.kipa.org>

- 주 최 : 특허청
- 주 관 : 한국발명진흥회

GOOD IDEA!

# 제25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최안내 (제14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 포함)

## 전시회 개요

- **목적**
  - 우수 학생 발명품을 발굴·시상하고 전시하여 학생들의 발명의식 고취 및 창의력 계발에 기여
- **행사 추진기관**
  - 주최/주관 : 특허청·조선일보사/한국발명진흥회
  - 후 원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WIPO, 국립과천과학관, 경제4단체, 발명유관단체
- **전시기간 : 2012. 7. 26(목) ~ 7. 30(월) 5일간 (예정)**
  - 개 막 식 : 2012. 7. 26(목) 09:00 \* 창의력 챔피언대회와 동시 개막
  - 시 상 식 : 2012. 7. 26(목) 10:30~
- **전시장소 : COEX Hall A1**
- **전시운영**
  - 전시시간 : 09:00 ~ 18:00 (2012. 7. 26 - 7. 30)
  - 발명품 전시관(자유관, 주제관) 운영    •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진행
- **출품신청**
  - 접수기간 : 2012. 3. 1(목) ~ 3. 31(토)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우편접수 불가)
    - ※ 온라인 신청 절차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 ※ 접수기간 이후 연장 접수가 불가하오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처 : [www.kosie.net](http://www.kosie.net) 에서 **신청하기** 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 **트 위 터 : [twitter.com/edukipa](https://twitter.com/edukipa) (공지사항 등 안내)**
- **전시회 진행절차**



※ 진행절차의 일정은 전시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발명진흥회 창의인재육성팀
  - 전 화 : 02)3459-2752 팩 스 : 02)3459-2758
  - E-Mail : sol4711@kipa.org

# '12 모스크바 국제 발명품 및 신기술 전시회 출품자 모집안내

## 전시회 개요

### ■ 전시명

- 2012 모스크바 국제 발명품 및 신기술 전시회  
(XV Moscow International Salon of Inventions and Innovation Technologies "Archimedes - 2012")

### ■ 기 간 : '12. 3. 20(화) ~ 3. 23(금) [4일간] \* 부스설치 : 3. 19(월)

### ■ 장 소 : Eco Center "Sokolniki"

### ■ 규 모 : 19개국 1,070여점 ('11년)

### ■ 주최 및 후원

- Center for Promotion of Invention and Rationalization Activities of VOIR, 러시아연방 대통령 행정부, 모스크바 정부, 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 시상제도 : 그랑프리, 금상, 은상, 동상 및 특별상 등

### ■ 출품지원금 국고지원 및 혜택

- 개인 및 중소기업자의 최소부스로, 카다로그재료, 번역비, 통역비 항목에 한해 발명품 1건 당 최대 1,000,000원 이내 지원 전시회 참가 前 지원
- 발명의 날 포상 신청 시 본 전시회 수상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 잔액은 참가단 귀국 후 정산하여 환불
- 지방자치단체 출품물 참가지원 활용 추천

### ■ 출품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 ■ 참가비용

- 직접참가 (전시 및 1인 현지 참가기준)

부스종류	부스크기	출품명의	참가비
기본부스	4m(2m×2m)	개인/기업	6,600,000원

\* 참가비 중 여행경비 및 공동경비 : 4,200,000원

- 위탁참가 (1건 위탁전시 기준)

부스종류	부스크기	출품명의	참가비
기본부스	4m(2m×2m)	개인/기업	4,700,000원

\* 참가비 중 위탁경비 및 공동경비 : 2,300,000원

### ■ 출품참가 일정 (안)

추진 내용	일 정
출품안내 및 신청접수	'12. 1. 25 ~ 2. 29
출품자 확정	'12. 3월 초
전시단 구성	'12. 3월 초
전시단 출국	'12. 3. 17
전시단 귀국	'12. 3. 25

### ■ 출품자 모집

- 모집기간 : 2012. 1. 25(수) - 2. 29(금)
- 신청방법 : 별첨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직접제출 또는 우편신청 (신청 서류는 email로도 송부)
- 입 금 처 : 신한은행 140-003-806543(예금주: 한국발명진흥회)
- 문 의 처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유동환 Tel:(02)3459-2843/Fax:(02)3459-2799/E-mail: Danny@kipa.org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 배제품으로 신청한 경우 즉시 환불함



# '12 제네바 국제발명품전시회 참가 모집



## 전시회 개요

### ■ 전시명

- 제40회 제네바 국제발명품전시회 (40th International Exhibition of Inventions)  
\*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발명품전시회

### ■ 기 간 : '12. 4. 18(수) ~ 4. 22(일) [5일간] \* 부스설치 : 4. 17(화)

### ■ 장 소 : Geneva Palexpo, Hall 7

### ■ 규 모 : 45개국 1,000점 ('11년)

### ■ 주최 및 후원

- Salon International Des Invention, 스위스 정부, 제네바시 정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 전시형태 (1부스 1발명품 전시 원칙)

### ■ 시상제도 : 그랑프리, 금상, 은상, 동상 및 특별상 등

- \* '11년 한국 : 11사(명) 11건, 금상 10, 은상 1, 특별상 6 수상

### ■ 출품지원금 국고지원 및 혜택

- 개인 및 중소기업자의 최소부스로, 카다로그게재료, 번역비, 통역비 항목에 한해 발명품 1건 당 최대 2,000,000원 이내 지원  
전시회 참가 전 지원
- 발명의 날 포상 신청 시 본 전시회 수상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 잔액은 참가단 귀국 후 정산하여 환불
- 지방자치단체 출품물 참가지원 활용 추천

### ■ 출품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 ■ 참가비용

- 직접참가 (전시 및 1인 현지 참가기준)

부스종류	부스크기	출품명의	참가비
기본부스	4m(2m×2m)	개인	9,900,000원
		기업	11,000,000원

\* 참가비 중 여행경비 및 공동경비 : 5,300,000원

- 위탁참가 (1건 위탁전시 기준)

부스종류	부스크기	출품명의	참가비
기본부스	4m(2m×2m)	개인	6,900,000원
		기업	8,000,000원

\* 참가비 중 위탁경비 및 공동경비 : 2,300,000원

### ■ 출품참가 일정 (안)

추진 내용	일정
출품안내 및 신청접수	'12. 1. 25 ~ 3. 9
출품자 확정	'12. 3월 중순
전시단 구성	'12. 3월 중순
전시단 출국	'12. 4. 14
전시단 귀국	'12. 4. 24

### ■ 출품자 모집

- 모집기간 : 2012. 1. 25(수) - 3. 9(금)
- 신청방법 : 별첨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직접제출 또는 우편신청 (신청 서류는 email로도 송부)
- 입 금 처 : 신한은행 140-003-806543(예금주: 한국발명진흥회)
- 문 의 처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유동환 Tel:(02)3459-2843/Fax:(02)3459-2799/E-mail: Danny@kipa.org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 배제품으로 신청한 경우 즉시 환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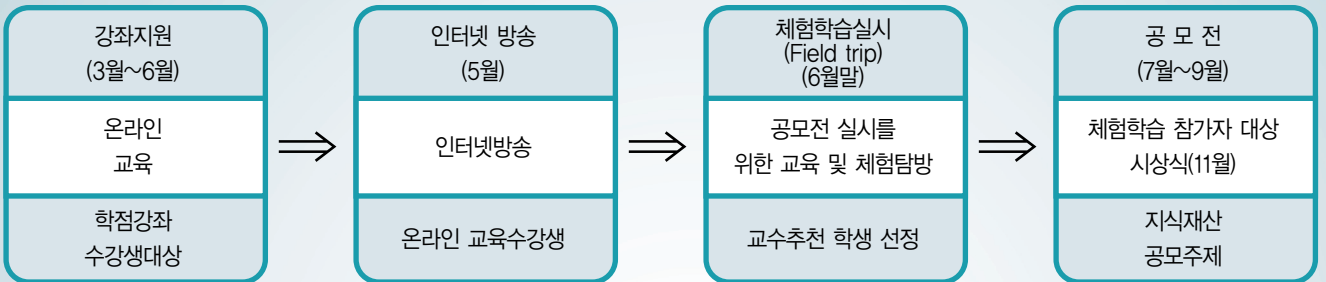




# 12년도 대학 지식재산 이러닝 (IP-Challenge 과정 지원 안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www.ipacademy.net)에서는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의 지식재산 이러닝 강좌지원 교육과 연계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인 IP-Challenge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지원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강좌운영 교수님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IP-Challenge 교육 프로그램 안내



### ■ 강좌지원

- 지식재산 이러닝 강좌 지원(변리사의 지식재산 질의응답 제공)  
※ 지식재산권 일반, 특허출원서 및 명세서 적성이해, 권리분석방법 등

### ■ 인터넷 방송

- 녹화방송으로 진행하여 시·공간 제약없이 지식재산 교육 서비스 제공  
※ '기업의 특허전략', '명세서 권리분석방법' 과 관련된 시의성 있는 방송 교육

### ■ 체험학습(Field trip)

- 선발대상 : 교수 추천자(성적우수자), 인터넷 방송 수강자
- 체험내용 : 지식재산 실습과정 및 지식재산 현장 탐방 (특허법원, 기업 특허부서 및 관련 생산시설 등)

### ■ IP-Challenge 콘텐츠 공모전

- 참가대상 : 체험학습 참가자
- 공모내용 : 기업과 연계된 IP주제에 대한 레포트형식 제출·발표평가
- 시상내역(안)

명칭	상격	시상 작품수	시상 내용
대상	지식경제부장관상	1	상장 및 상금
금상	특허청장상	2	상장 및 상금
은상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상	3	상장 및 상금
동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 등*	8	상장 및 상금
장려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	20	상장 및 상품권
	합계	34	

## 문의 및 교육신청

### ■ 운영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교육기획팀 설경범 계장
- Tel : 02-3459-2773, 2765 Fax : 02-3459-2789, Email : soul1245@kipa.org

※ 교육 신청 전에 미리 문의 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2012 IP Campus 교육일정표

No.	일자	강좌명	수강료(회원사)
<b>지재권 일반과정 (※특허청 지원, 노동부 환급)</b>			
1	02.08~02.10	지식재산권 기초 1기	55만 (48만) 노동부 환급 / 특허청 지원
2	02.15~02.17	디자인·저작권 이해 및 실무 1기	
3	02.22~02.24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침해판단 1기	
4	03.14~03.16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성 판단 1기	
5	03.21~03.23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1기	
6	03.28~03.30	특허평가 및 라이선싱 계약 1기	
7	04.04~04.06	강한 상표를 위한 브랜딩 전략 1기	
8	04.25~04.27	주요국(IP5) 지식재산권 비교 실무 1기	
9	05.09~05.11	지식재산권 기초 2기	
10	05.23~05.25	중국특허 마스터 과정 (출원~소송)	
11	06.05~06.08	디자인·저작권 이해 및 실무 2기	
12	06.13~06.15	지식재산 번역 (한-중)	
13	06.20~06.22	미국특허 마스터 과정 (출원OA)	
14	08.22~08.24	지식재산권 기초 3기	
15	08.29~08.31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성 판단 2기	
16	09.05~09.07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침해판단 2기	
17	09.12~09.14	지식재산 번역 (한-미)	
18	09.19~09.21	특허평가 및 라이선싱 계약 2기	
19	09.26~09.28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2기	
20	10.10~10.12	강한 상표를 위한 브랜딩 전략 2기	
21	10.24~10.26	유럽특허 마스터 과정 (출원~소송)	
22	10.31~11.02	미국특허 마스터 과정 (분쟁소송)	
23	11.07~11.09	주요국 (IP5) 지식재산권 비교 실무 2기	
24	11.14~11.16	지식재산권 기초 4기	
소계		24회	-
<b>지재권 특별과정 (※특허청 지원)</b>			
1	02.28	FTA 체결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한-미, 한-EU)	18만 (15만) 노동부 환급
2	04.17	수출입시 꼭 고려해야 할 지식재산 실무	
3	04.19	Patent Troll 대응 및 단계별 특허분쟁 대응요령	
4	05.03	특허침해 감정부 작성 및 손해액 산정	
5	05.29	직무발명 제도 및 직무발명 보상평가	
6	06.26	영업비밀 관리 및 부정경쟁 방지 실무	
7	06.28	특허 소송시 변론능력 SKILL UP	
8	09.25	연구노트와 발명신고서 작성법	
9	10.02	단계별 특허비용 및 기일 관리전략	
10	10.05	영문 지재권 용어 및 영문레터 작성 노하우	
11	10.17	심사관과 함께하는 명세서 클리닉	
12	11.22	올해의 판례동향-특허, 디자인	
13	11.23	올해의 판례동향-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소계		13회	-
<b>지재권 국제과정</b>			
1	03.03 ~ 05.17(8日)	PADIAS* (해외강사 국내초청 강의)	220만 (200만)
2	7月	지식재산 실크로드_USA (해외연수)	추후결정
3	8月	지식재산 실크로드_EUROPE (해외연수)	추후결정
소계		3회	-

\* PADIAS : Patent Application Drafting and Infringement Avoidance Strategies  
(미국 특허출원서 작성 및 침해회피 전략)실무 과정

- ※ 상기 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노동부(고용보험 가입대상자) : 교육비의 약 15% 환급  
특허청(중소기업 대상) : 교육비의 80% 환급
- ※ 환급 중복 지원 불가, 특허청 지원 대상자 회원사 할인 제외
- ※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캠퍼스 사이트([www.ipcampus.kr](http://www.ipcampus.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캠퍼스 특징점

### Best in Man Power

- 지재권 분야 국내 최고 전문 강사진 500명 이상 보유
- 30년 이상의 IP교육 운영 노하우 및 체계적인 프로세스
- 깊이 있는 교육내용 반영을 위한 IP분야 전문가 (변리사) 내부인력 보유
- 체계적교과정 설계를 위한 교육공학 전공자 운영

### Best in Man Power

- 국내 최대의 지재권 온라인 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Blended Learning 실시
- 실무경험을 바탕으로한 전문 강사진의 사례중심 교육
- IP 현안과 관련한 교육내용 연구개발 및 운영 서비스 고객 맞춤형 찾아가는 위탁교육 실시

지식재산캠퍼스  
**IP CAMPUS**  
IP Education Tomorrow!

### Best in Man P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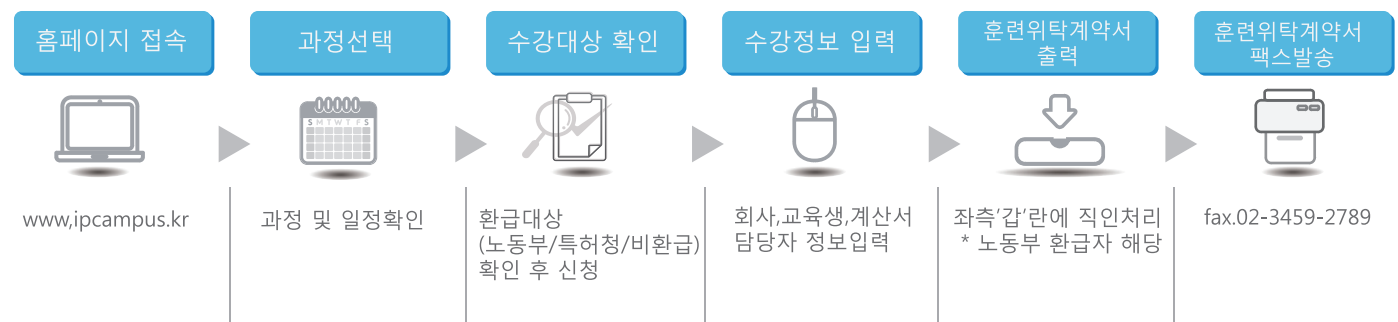
- 최적의 접근성(서울 강남 소재)
- 쾌적한 교육 환경 (연면적 14,713평, 교육장 3개 1일 동시 교육장 수용인원 300명)
- 최신식 사양의 교육용 노트북 30대
- 구내식당 및 수강생 휴게실 마련

## 교육일정

분 류	교 육 과 정 명	기 간	교 육 비	환 급
일 반 교 육	지식재산권 기초	02.08 ~02.10 (3일)	55만 (48만)	노동부/특허청
	디자인 저작권 이해 및 실무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침해판단			
특 별 교 육	한-미,한-EU FTA 이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02.28(1일)	18만 (15만)	특허청
국 제 교 육	PADIAS* (해외강사 초청 국내 강의)	03.08~05.22(8일)	220만 (200만)	비환급

\* PADIAS : Patent Application Drafting and Infringement Avoidance Strategies (미국 특허출원서 작성 및 침해회피 전략)실무 과정  
\* 자세한 사항은 [www.ipcampus.kr](http://www.ipcampus.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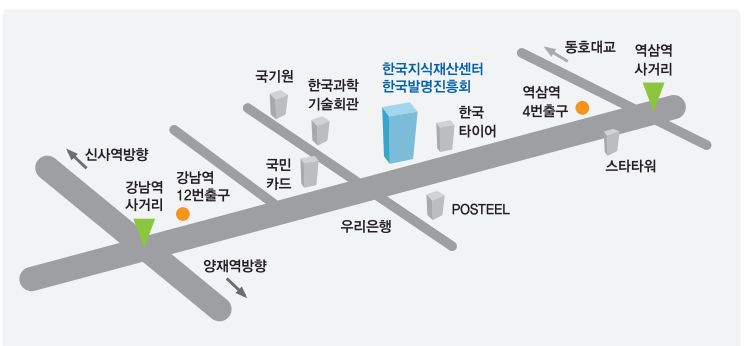
## 교육비 환급 방법

분 류	내 용
노동부 교육비 환급 (고용보험가입자 대상)	-정확한 환급액은 과정 시작 후 알 수 있음 -환급비율 : 우선지원대상기업 약20% 대기업 약15% 환급 예상
특허청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 대상)	-교육비의 80% 환급 (대기업 법률사무소,공공 및 정부출연기관,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환급대상 제외)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및 노동부 중복 환급 적용불가

## 오시는길

**IP CAMPUS**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전 화 (02)3459-2781,2782 팩 스 (02)3459-2789



# Patent Application Drafting and Infringement Avoidance Strategies

## 프로그램 명칭

PADIAS : Patent Application Drafting and Infringement Avoidance Strategies  
(미국특허출원 작성 및 침해 회피 전략)

## 프로그램 특징

- ▶ 미국 최고의 IP 전문 Law School인 FPC(Franklin Pierce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at the UNH School of Law)의 실무교육 과정을 서울에서 수강
- ▶ 특허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의 오랜 강의 경험을 가진 미국 로스쿨 교수 및 로펌의 파트너급 변호사들로 구성된 교수진의 실무 경험 전달
- ▶ 미국 특허법 개정사항에 대한 현행법과의 비교, 미국과 유럽의 진보성 판단기준 차이 비교를 통한 넓은 안목 제시
- ▶ 전략적 청구범위 및 의견서 작성 방법, 보정의 최소화 방법에 대한 노하우 공개
- ▶ 한국어로의 Q&A 및 요점 정리를 통한 내용 이해 도모
- ▶ 수료자에게 Franklin Pierce Center의 Certificate 수여  
- University of New Hampshire School of Law에서의 학점 인정 가능

## 교육기간

12주간 총 8일 출석 (3/8~3/9, 4/12~4/13, 5/17~5/18, 5/21~5/22)

- ▶ 장 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교육장 (서울 역삼동 소재)
- ▶ 사용 언어 : 영어 + 한국어 (정리 및 질의응답) 병용

### ● 수강대상자

- ▶ 기업 특허업무종사자 또는 특허사무소의 미국출원 담당자(경험자)
- ▶ 국내에서 미국특허출원 실무수준을 향상코자 하는 자
- ▶ 미국현지교육(파견 등)을 준비하는 자

### ● 수강료

- 220만원 (한국발명진흥회 회원사 : 200만원)
- ▶ 조기신청자 우대 : 수강 등록 선착순 10명에게는 수강료 10% 할인 (비회원사 : 198만원, 회원사 : 180만원)  
\* 수강신청 후 교육담당자와 확인 실시
  - ▶ 단체 할인 : 1개 기업(단체)에서 3인 이상 참가시 전체수강료 10% 할인  
\* 조기신청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 ▶ 수강신청방법(온라인신청)

- 1 www.ipcampus.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2 교육신청서 송부 (Fax : 02-3459-2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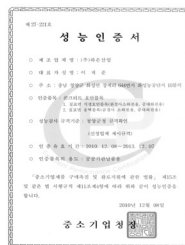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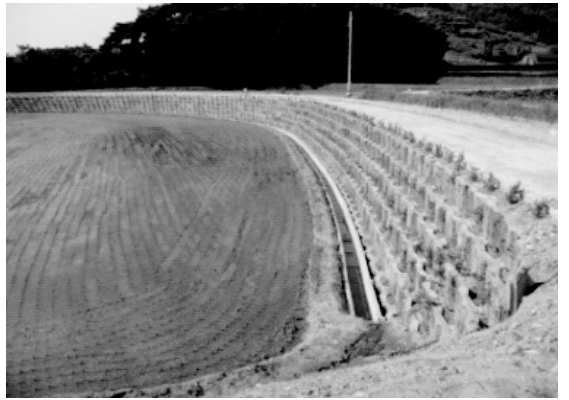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캠퍼스 사이트(www.ipcampus.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안. 축대. 옹벽을 자연환경으로.....

주식회사 하은 산업의 황토색  
벗짚표면 호안, 축대, 옹벽은  
대한민국 조달 우수물품입니다.

## 보유기술및 인증

- ◎ 한국산업규격(KS) 표지 인증 (KS F 4010)
- ◎ QMS 인증(DIN EN ISO 9001 인증)
- ◎ EMS 인증(DIN EN ISO 14001 인증)
- ◎ 신기술 인증 (NET)
- ◎ 유망중소기업지정 (충남도지사)
- ◎ 환경표지인증(호안블록)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중소기업청장)
- ◎ 건 마크 인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장)
- ◎ K 마크 인증 (한국산업기술원장)
- ◎ 성능 인증 (중소기업청장)
- ◎ 대한민국 ESH가치경영대상(조달청장)
- ◎ 청양군 최고기업인상 수상(청양군수)
- ◎ 우수조달품목 지정(조달청장)
- ◎ 발명특허: 벗짚층이 부착된 환경친화형  
조립식 호안블록외 11건
- ◎ 실용신안: 벗짚층이 부착된 호안블록  
(축대블록)외 9건
- ◎ 디자인등록: 식생호안블록외 14건
- ◎ 해외디자인 등록: 가로수보호의자외 3건



## 주식회사 하은산업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644화성산업단지 10블럭  
TEL041)942-8523~4 FAX041)942-8525

http: www.juhaeun.co.kr E-mail: juhaeun@hanmir.com

## 아름다운 빛의 근원 SLIM LINE 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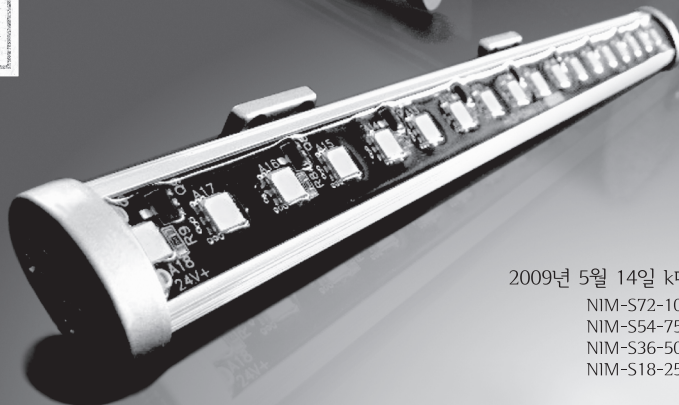
• 설치시공사례



2009년 6월1일 CD마크 선정



1. SMD TYPE LED
2. SLIM & SIMPLE
3. 다양한 각도 조정의 브라켓



2009년 5월 14일 k마크 취득  
 NIM-S72-1000-F/WH  
 NIM-S54-750-F/WH  
 NIM-S36-500-F/WH  
 NIM-S18-250-F/WH

2009년 4월 29일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LED 조명등(NIM-CS1.5W-A)  
 LED 조명등(NIM-CS6W-A)



0,24W SMD TYPE LED 소자  
 R-G-B 3COLOR in 1 chip

어둠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눈동자

## LED CLUSTER

• 설치시공사례

대전부리공원



남지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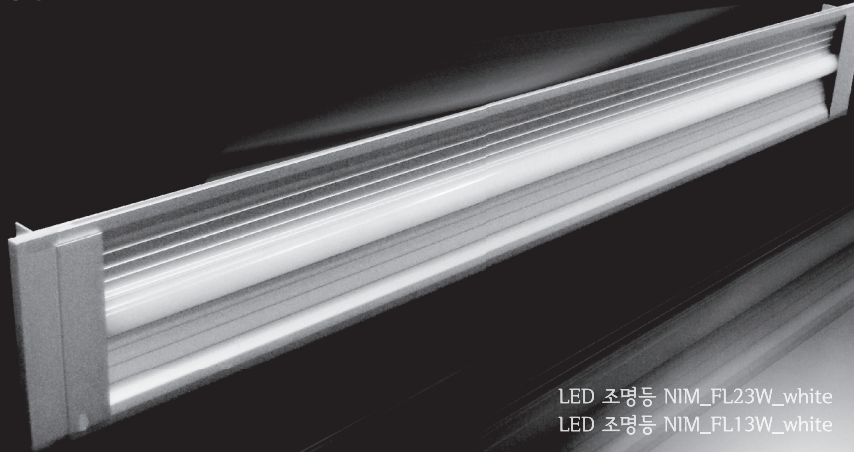
## Insertion LED Illuminating Light

• 설치시공사례



일반 형광등은 자외선이 발생하나 매입형 LED등기구에서는 자외선을 방출하지 않으며 연간 30Kg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 중 녹색기술개발 성장동력화에 발맞춘 친환경 제품이다.

## ECO FRIENDLY



LED 조명등 NIM\_FL23W\_white  
 LED 조명등 NIM\_FL13W\_white

2012

#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 대한민국 여성발명품박람회

## KOREA INTERNATIONAL WOMEN'S INVENTION EXPOSITION

세계 여성 발명인과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명 아이디어를 겨루고 심사, 수상하며  
여성 발명품의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해외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세계여성발명대회!  
여성 발명·기업인들의 우수한 발명품 및 생산제품을 전시하여 국내·외 판로개척과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명품박람회!  
여성 발명인과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 일 시 : 2012년 5월 3일(목) ~ 6일(일)
  - 장 소 : COEX 1층 A홀
  - 참가대상
    - \* 세계여성발명대회 : 국내외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보유중인 여성, 여학생(만 18세 이상) 및 여성 기업인의 발명품
    - \* 여성발명품박람회 : 여성 발명인, 여성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업체
  - 모집기간 : 2012년 3월 31일(토)까지 (선착순으로 심사, 선정되므로 신청 마감일 이전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행사 홈페이지(www.kiwie.or.kr)에서 온라인 등록 또는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이메일(kiwie@paran.com) 접수
- ※ 상기 행사와 함께 「2012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포럼」과 「2012 세계여성발명기업인 워크샵」도 개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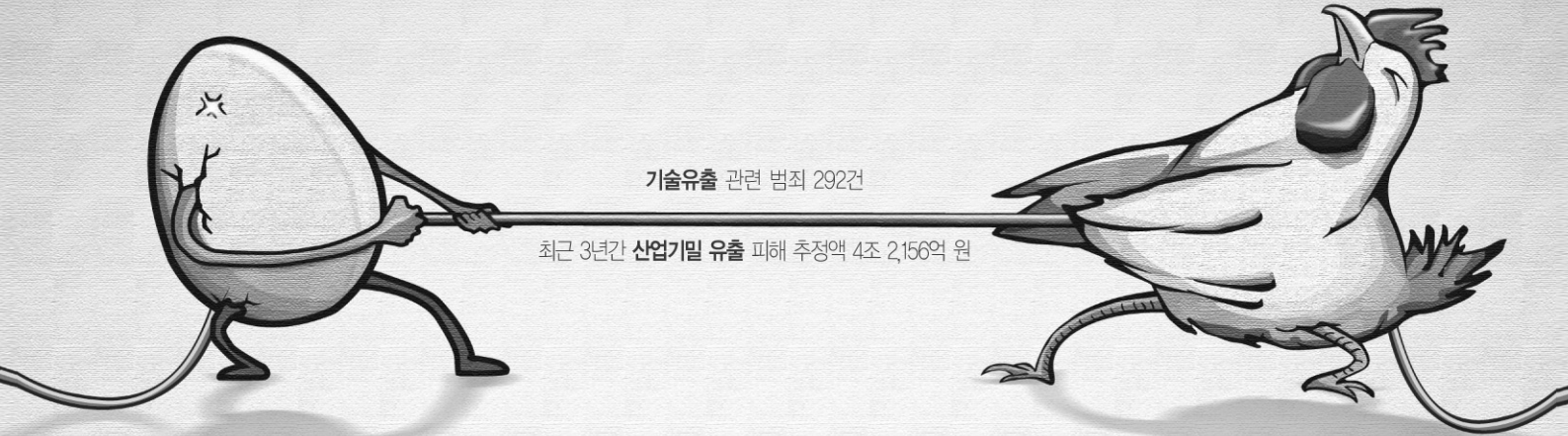


- 주최 : 특허청
- 주관 : 한국여성발명협회
- 협찬 : KIA 기아자동차
-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한국특허정보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국제발명가협회연맹(IFIA)

**문 의**

한국여성발명협회 : 02-538-2710  
전 시 사 무 국 : 02-780-0863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기술유출 관련 범죄 292건

최근 3년간 산업기밀 유출 피해 추정액 4조 2,156억 원

# 아직까지 분쟁 중?

이제 다툴 필요 없습니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www.tradeseecret.or.kr](http://www.tradeseecret.or.kr)

##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는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유출, 도용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그 영업비밀의 존재와 보유시점의 입증을 도와주는 서비스

## 특장점

- 한국특허정보원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안정성이 보장된 서비스
- 원본 제출없이 전자지문만을 이용함으로써 증명과정에서 비밀정보의 유출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
- 워드, 이미지, 동영상 등 모든 전자파일을 지원
- 인터넷만 연결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용 가능

## 활용대상

아이디어 자료, 연구노트, 설계도면, 거래실적, 재무자료, 마케팅 자료, 고객정보, 계약서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체의 영업 노하우, 조리법 등 원본 증명이 필요한 모든 전자문서

# Column

애플 VS 삼성, 두 거인의 특허 전쟁

여기서 잠깐 \_ 책과의 만남, 신규 회원가입사 소개

특허전쟁은 창과 방패... 특허재산 확보하라

여기서 잠깐 \_ 특허 Q&A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이길 수 있을까?

여기서 잠깐 \_ 발명역사 속으로

발명과 특허 그리고 기술이전

2011년 대한민국을 웃겼던 예능 프로그램명, 상표권의 향방은?

미국 트레이드 드레스와 한국의 지식재산권제도 비교

여기서 잠깐 \_ 문화산책

# Column

# 애플 VS 삼성, 두 거인의 특허 전쟁

두 회사의 제품 개발 과정, 분쟁 배경, 분쟁 진행 현황,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인한 산업 구조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자



김 현 호  
특허법인 맥 대표변리사

**최** 근 한국사회를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Social Network Service)로 인한 급격한 사회적 변혁을 맞고 있다. SNS의 급격한 보급 및 그로 인한 소통 방식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변혁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어디에서나 SNS를 이용가능하게 한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보통명사와 같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이란 단어는, 실은 컬러폰이 막 나오기 시작한 10여년 전부터 IT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고된 ‘컨버전스’의 한 형태나 다름없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독립적이면서 다양한 IT 제품들이 있었다. 즉, 기존의 오디오 기기를 모두 통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반 시장이라는 용어 대신 음원 시장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기기인 MP3 플레이어, 오토 드라이버들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던 네이게이션, 비즈니스맨의 필수 아이템이었던 PDA,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1997년의 국내 PCS 폰 보급 열풍으로 거의 전 국민이 하나씩 소유하게 된 전자기기인 휴대폰과 같은 다양한 최신 전자 제품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당시 IT 업계의 기술적 이슈였던 ‘컨버전스’에 따라 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IT 제품 간 ‘컨버전스’를 시도한 수많은 종류의 IT 제품들이 출시되기 시작하였다.

즉, 각 제품의 제조사들은 자사 제품의 상품성을 높이려는 시도에서 네이게이션에 게임기능과 MP3 기능을 추가하거나, 휴대폰에 MP3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양한 컨버전스 제품들을 출시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삼성전자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다양한 휴대용 전자제품들의 기능 중 적어도 두 개의 기능을 포함하는 이른바 초기 컨버전스 기기들을 앞다투어 출시하였던 시기가 있었다.

한편, 미국의 애플사는 2000년대 중반 'iPod' 라는 이름의 MP3 플레이어를 시장에 출시하였으며 이후 'iPod' 의 후속 제품으로 'iPod 터치' 를 내놓게 된다. 이 제품은 이후 애플사의 제품에 대한 신매니아층을 형성하게 되며, 신매니아층은 'iPod 터치' 에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iPod 터치' 의 기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그들만의 온라인 공간에서 공유하게 된다.

당시 개발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으로 인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능적 확장성을 갖게 된 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기기에 열리 어답터들은 열광하였고, 앞다투어 자신의 제품에 당시까지만 해도 애플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애플의 특정 제품에 영감을 받은 다수의 유저들이 참여해 자생적으로 생겨난 응용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시장을, 이후 애플은 정책적으로 양성화하게 되며, 그로 인해 지금의 앱스토어가 탄생하게 된다.

이로써 애플은 그들이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얇고 가벼우면서도 전화 기능을 제외한 사용자가 원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후

이 제품에 카메라 모듈과 휴대폰 기능이 추가되어 현재의 아이폰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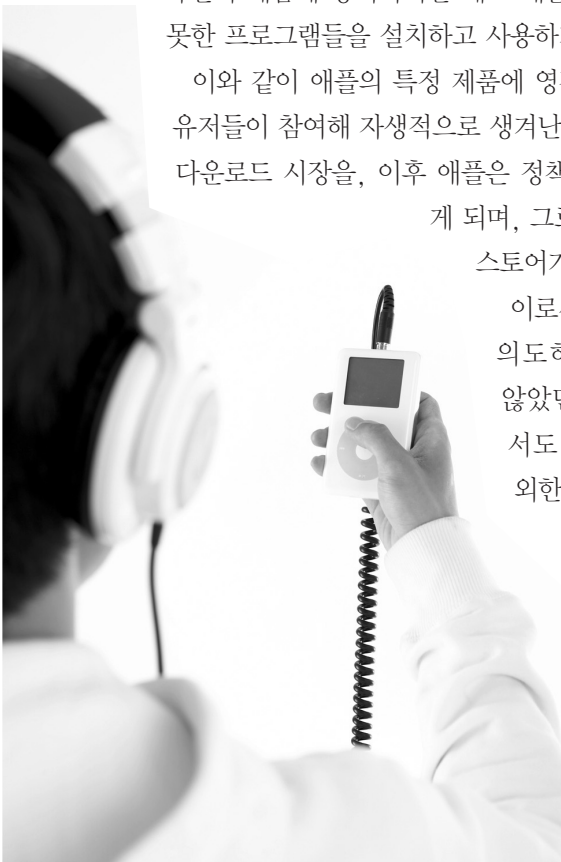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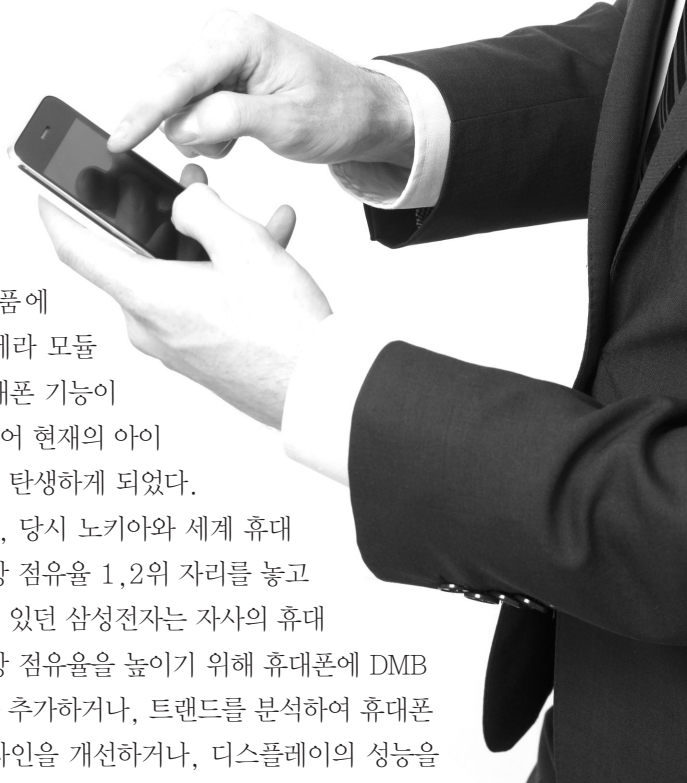
한편, 당시 노키아와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1,2위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던 삼성전자는 자사의 휴대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폰에 DMB 기능을 추가하거나, 트렌드를 분석하여 휴대폰의 디자인을 개선하거나, 디스플레이의 성능을 높이거나, 휴대폰의 정보 입력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하드웨어적인 개선이 강조되는 신제품들을 주로 출시하고 있었다.

아울러, 아이폰 시장에서 선풍적 인기를 목격한 삼성전자를 포함한 기존의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아이폰에 대항하기 위한 운영체제로 안드로이드를 채택하고 이른바 안드로이드 진영을 갖춘 후, 기존의 피쳐 폰 중심의 제품 판매에서 탈피하고 아이폰을 따라잡기 위한 이른바, 본격적인 스마트 폰 제품 판매를 계획하게 되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하드웨어적으로 당대의 최고 사양으로 무장한 갤럭시 시리즈를 탄생시키며, 애플의 앱스토어에 대응한 독자적인 앱스토어를 개설하고, 심지어는 갤럭시라는 이름의 스마트폰에 한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국형 어플리케이션이 기본으로 내장된 제품까지 선보였다.

뿐만 아니라, 이후 삼성전자는 갤럭시 S에서 전화 기능을 제거한 갤럭시 플레이어를 애플의 ipod 터치에 대항마격으로 출시하게 된다.

이러한 전사적인 추격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일부의



제품군에서는 적지 않은 시행 착오를 겪기도 하였으며, 일부 얼리 어답터들로부터는 애플의 제품군을 모방하여 판매하는 ‘카피캣’이라는 오명을 부여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필자의 개인적 생각으로 삼성전자는 그와 같은 치열한 추격의 노력에 따라 결과적으로 애플이 소송을 통해 견제하기로 결정한 스마트 폰 제조기업의 위상을 갖추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즉, 삼성전자가 초기의 열세를 극복하고 스마트 폰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게 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이러한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해 2011년 4월 15일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갤럭시 탭과 갤럭시 S의 디자인 특허 침해로 이유로 미국 산호세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된다.

이에 삼성전자는 애플의 첫 제소 후 1주일이지나지 않아 애플이 오히려 자사의 기술을 도용했다며 한국, 일본, 독일 법원에 총 10건의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두 기업의 특허 소송은 전 세계로 확대된 결과,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한국 미국을 포함해 총 9개 국가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일자	국가(지역)	진행 상황
11.04.15	미국(산호세)	애플, 특허 침해로 제소
11.04.21	한국(서울중앙)	삼성, 특허 침해로 제소
	독일(만하임)	삼성, 특허 침해로 제소
	일본(동경)	삼성, 가처분 신청
11.06.16	독일(만하임)	애플, 특허침해로 제소
11.06.17	일본(동경)	애플, 가처분 신청
11.06.23	한국(서울중앙)	애플, 특허침해로 제소
	네델란드(헤이그)	애플, 가처분 신청
11.06.28	미국(ITC)	삼성, 애플제품 수입금지 신청
11.06.29	영국(런던)	삼성, 특허침해로 제소
11.06.30	미국(산호세)	삼성, 4월 애플 제소에 반소
	네델란드	삼성, 특허침해로 제소
	프랑스	삼성, 특허침해로 제소
	이탈리아	삼성, 특허침해로 제소
11.07.05	미국(ITC)	애플, 삼성제품 수입금지 신청
11.07.28	호주(뉴사우스웨일즈)	애플, 가처분 신청
11.08.04	독일(뒤셀도르프)	애플, 가처분 신청

일자	국가(지역)	진행 상황
11.08.09	독일(뒤셀도르프)	법원, 갤럭시 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11.08.16		법원, 삼성전자 독일법인으로 가처분 한정
11.08.23	일본(동경)	애플, 특허 침해로 제소
11.08.23	네델란드(헤이그)	법원, 애플의 가처분 신청 10건 중 1건만 인정
11.09.09	독일(뒤셀도르프)	법원, 삼성의 갤럭시 탭 10.1의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11.09.12	영국(런던)	애플, 특허침해로 제소
11.09.16	호주(뉴사우스웨일즈)	삼성, 특허침해로 제소
11.10.05	프랑스	삼성, 아이폰 4S 가처분 신청
	이탈리아	
11.10.06	영국(런던)	삼성전자, 9월 애플 제소에 대해 반소
11.10.13	호주(뉴사우스웨일즈)	법원, 갤럭시 탭 10.1 가처분 결정
	미국(산호세)	법원, 갤럭시 탭 10.1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 보류
11.10.17	호주(뉴사우스웨일즈)	삼성, 아이폰 4S 가처분 신청
		삼성, 갤럭시 탭 10.1 가처분 결정(10/13)에 대한 항소
11.11.28	독일(뒤셀도르프)	애플, 갤럭시 탭 10.1 가처분 신청
11.11.29	네델란드(헤이그)	애플, 멀티터치특허관련 신속본안 소송제기
11.11.30	호주(뉴사우스웨일즈)	법원, 갤럭시 탭 10.1 가처분 항소심에서 삼성전자 승소 판결
11.12.02	미국(산호세)	법원, 애플의 가처분 신청 기각
11.12.08	프랑스	법원, 삼성의 아이폰 4S 가처분 신청 기각
11.12.09	호주(뉴사우스웨일즈)	법원, 애플의 갤럭시 탭 10.1 대법원 항소 기각
12.01.20	독일(만하임)	법원, 삼성전자의 유럽 특허의 애플의 비침해 판결

[표 1: 애플과 삼성의 분쟁 기록]

이들 9개 국가 중 현재까지 판결이 내려진 국가는 5개 국가이며, 독일은 제일 먼저 애플의 손을 들어 주었다. 즉, 애플의 제소에 대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처분을 내려준 것이다.

이후 삼성전자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판매금지 범위를 유럽 전체에서 독일로 한정시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내려지기는 하였지만,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독일의 경우에 어쩔수 없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회피 설계한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2011년 8월에는 네델란드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S, 갤럭시 S II, 갤럭시 에이스로 구성되는 3종류의 스마트 폰 판매금지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애플 VS 삼성, 두 거인의 특허 전쟁

어 10월에도 호주에서 갤럭시 탭 10.1의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들 중 호주에서의 판매금지 결정은 11월 호주 연방법원이 항소심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애플의 소송에 대한 법원의 초기 판단은 이와 같이 상당 부분 위협적이거나 유효한 법원의 판결로 귀결된 반면, 애플을 상대로 한 삼성전자의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2011년 10월 중순경 네덜란드에서 삼성전자의 애플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것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승소한 판결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이 큰 이슈가 된 2011년도에 국내 특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누가 최종적인 승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 및 비공식적 토론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특허 전문가들은 쉽게 회피 가능한 디자인 특허 및 디스플레이의 터치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를 주요 무기로 보유하고 있는 애플보다는 3세대(3G) 통신 분야에서 회피 설계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표준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비교 우위를 점치고 있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표준기술특허를 이용한 애플에 대한 반격은 소송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된다.

먼저, 애플을 상대로 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삼성전자는 ‘공정·합리·비차별(Fair·Reasonable·Non-Discriminatory)’이란 뜻의 표준특허 이용 규칙인 프랜드(FRAND) 조항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

었다.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011년 10월 13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대상으로 제기한 3G통신 표준 특허 침해 관련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헤이그 법원은 삼성이 주장한 4개의 통신 특허에 관한 아이폰, 아이패드 금지 가처분 신청 4개를 모두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 삼성의 제안이 FRAND 협정으로 인해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요구한 칩셋에 대한 각 특허별 로열티 비율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소송과는 별도로 프랜드 조항으로 인해 EU에 의한 반독점법 위반이란 불명예를 안을 위기에도 처해있다고 한다.

EU는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하여 자사의 윈도우 운영체제에 메신저를 끼워넣은 행위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매기고 끼워 팔기 관행에 제재를 가한 과거의 사례에서와 같이 시장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불공정 행위로 시장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EU가 삼성이 프랜드에 해당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애플에 과도한 특허소송을 제기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삼성이 프랜드 기술을 바탕으로 과도하게 애플을 소송으로 압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애플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특허권

자 또는 적법한 제조·판매권을 갖는 자가 판매한 특허품을 적법하게 구입한 경우에 구입한 자가 그것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매하더라도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론인 소진 이론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1월 20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3G 통신망 상태에 따라 전송되는 데이터를 묶어서 전송속도를 높이는 기술에 대한 삼성전자의 유럽특허 EP1005726에 대한 애플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독일 법원은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애플이 통신기업이 아니라 전통적인 컴퓨터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애플이 삼성전자의 유럽특허 EP1005726를 회피하는 독자적 기술을 적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삼성이 보유한 통신특허에 대한 소진 이론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만약, 삼성의 통신특허가 이미 소진됐다고 재판부가 평가한 것이라면 이는 앞으로의 통신특허 관련 소송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아직 소송은 진행 중이고 해당 판결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독일에서 제기한 3건의 통신특허 침해 소송 가운데 일부의 판결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특허에 기초한 소송 이후의 판결들을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 발생 경위 및 현재까지의 진행 경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결국 향후 두 기업은 멀지 않은 시점에 협상 테이블에 안게 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지위에 앉기 위해서 두 기업은 진행 중인 소송에 적지 않은 추가의 비용을 쏟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 두 기업의 싸움은 하드웨어 산업의 거인인 삼성전자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거인인 애플

간의 싸움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특허 소송에서 들고 있는 무기인 통신 관련 표준특허와 애플이 지금도 계속 비축해나가고 있는 무기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들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러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하드웨어 산업에서 현재의 주도권만으로는 당장의 싸움이 별론으로 하더라도, 향후 IT 혁명 이후의 기술 혁명 시대에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당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기술이 기술 수요자가 원하는 작용 및 효과를 달성시키는 기능적 알고리즘을 필수 구성으로 하는 것인 것처럼, 소프트웨어 기업은 미래 기술 수요에 대한 비전과 통찰력에 따라 기술 개발 방향을 결정하고 제품의 기능을 구현한다.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은 그들이 원하는 기능을 표출시키는데 필요한 통신용 칩셋, 디스플레이 장치 등의 하드웨어 기술을 단지 활용만 할 뿐이다.

하지만, 이에 반해 기술에 대한 하드웨어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업은 고성능, 고효율, 고집적의 부품과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이들을 가급적 저비용으로 생산 판매하는 데에만 몰두할 뿐, 미래 기술 수요에 대한 비전과 통찰력을 갖지 못한다.

결국, 이와 같이 하드웨어 산업에 천착하는 기업들은 미래의 소프트웨어 강자들의 부품 업체로 전락하거나, 그들의 제품을 모방한 B급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판매하는 업체로 전락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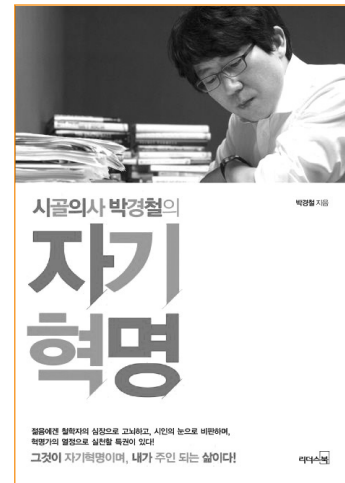
이것이 바로 필자가 우려하는 기술 식민 기업의 모습이다. 삼성전자가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어도 국민들은 적어도 삼성전자를 한국의 세계적 기업으로 자랑스럽게 여겨왔으며 필자 또한 그래왔다. 금번 애플과의 소송 및 세계시장에서의 전쟁을 통해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으로 재도약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라는 바이다. 2012. 2 |



## 자기혁명(시골의사 박경철)

### 시골의사 박경철이 제안하는 혁명가의 삶!

시골의사 박경철이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던지는 자기혁명의 메시지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 청년은 세상을 어떻게 읽고 소통해야 하는지, 청년은 자기성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지금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등에 대한 치열했던 고뇌와 시행착오의 기록을 담고 있다. 실천하는 지식인이자 비판가이며 청년의 멘토로 떠오른 저자가 지난 6년간 청년들과 나눈 소통과 교감의 기록을 엮었다. 아프지만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냉정한 현실을 전하며, 스스로 만들어낸 한계의 경계를 허무는 '혁명가'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자아찾기, 사회인식, 시간활용, 책임기, 글쓰기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며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 자\_ 박경철  
출판사\_ 리더스북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 1월 신규 회원가입사 소개

### (주)바오텍

- 대표자: 한성보
- 업태/종목: 제조
- 주소: 경북 문경시 산양면 진정리 산양공단2길 19
- 전화번호: 054)553-1579
- 홈페이지주소: www.baotec.co.kr



# 특허전쟁은 창과 방패... 특허재산 확보하라

삼성전자와 애플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 간의 특허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돈벌이로 삼는 특허괴물의 횡포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국내 대기업들은 특허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특허 소송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특허 개발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인수합병하거나 특허를 사들이면서 힘을 키우고 있다.

특허전쟁에서 승리한 사례와 특허괴물의 횡포, 향후 전개될 특허 전쟁 양상, 그리고 대기업들의 특허전쟁에 대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자.



송영록  
이투데이 산업부 기자

**최** 근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는 뉴스는 바로 특허소송이다. 누가 누구를 제소했고, 어디가 어디에 승소 혹은 패소했는지가 전세계 뉴스에 매번 등장한다.

이처럼 특허전이 치열한 이유는 경쟁업체들을 시장에서 밀어내기 위해 특허라는 무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전쟁은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 소송을 당한 기업은 논리를 뒤집을 만한 단단한 방패를 준비해야 한다. 창을 가다듬어서 역공에 나서기도 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업들은 창과 방패를 하나씩 들고 공격과 방어를 거듭한다. 특허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해당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방패 없이 창으로 공격만 일삼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는 존재도 부각되고 있다. 이들이 날카로운 창끝으로 공격해오면 해당기업은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다.

잘못해서 창에 찔리기라도 하면 장사해서 번 돈의 대부분을 특허괴물에게 내놓아야 한다. 심각한 경우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제품의 판매가 중지되면서 사업의 존폐가 흔들릴 수도 있다.

### 업종불문 치열한 특허전쟁 =

“애플뿐만 아니라 전세계 기업들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이진희 삼성전자 회장은 애플과의 특허전쟁이 시작되자 이같이 말했다. 이후 10개월이 지난 현재 글로벌 특허전쟁은 악화일로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LG전자, 하이닉스반도체,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기업들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들과 치열한 특허 전쟁을 펼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융·복합 제품이 많아지면서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특허가 급증하고 있고, 핵심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시장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지난해 글로벌 전자·IT 업계를 뜨겁게 달궜다.

지난해 4월 애플은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가 아이폰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삼성전자도 한국,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LED 조명시장에도 숨막히는 특허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독일 오스람은 LED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지난해 미국과 독일에서 삼성전자, 삼성LED, LG전자, LG이노텍을 제소했다. 삼성LED와 LG전자 등도 곧바로 판매금지 소송으로 응수했다.

특히 지난해 9월 LG전자와 LG이노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MW코리아와 아우디코리아, 양사의 공식 딜러&서비스센터 등을 상대로 자동차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자동차 회사들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한 오스람의 자동차용 LED 패키지 헤드램프를 탑재했다는 이유에서다. LED 특허 관련 소송전이 격화되며 자동차 업계까지 불뚱이 튈 형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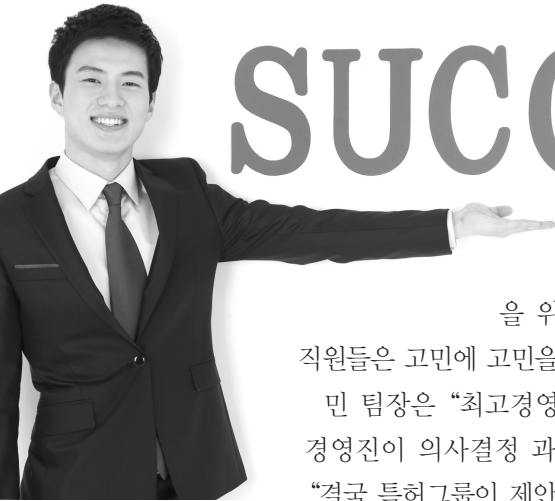
특허전쟁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기업도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미국 듀폰사가 자사 케블라 섬유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코오롱은 즉각 항소에 나섰지만 향후 결과에 따라 무려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 눈물겨운 특허 소송 승리 =

지난해 11월 17일, 하이닉스 특허그룹 직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11년 간 이어진 특허괴물 램버스와의 소송전에서 힘겹게 승리했기 때문이다.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낸 대역전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컸다. 특허전을 이끌어 왔던 민경현 특허라이센싱팀장의 머리 속에는 그동안의 힘겨웠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민경현 팀장은 “2009년에 큰 패소를 하며 수세에 몰리다가 역전을 한 극적인 승리”라며 감격했다.

“이기고 지는 건 소송의 불확실성을 봤을 때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특허팀의 위상이 많이 하락했고 사내에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 SUCCESS

이번 소송을 위해서 특허그룹 임직원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민 팀장은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경영진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며 “결국 특허그룹이 제안한 내용을 최종 승인했고 이는 승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소송에서 패하면 13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하이닉스의 명운이 걸린 소송이었다.

하이닉스와 미국 측 대리인인 OMM법률사무소의 공조도 승리에 일조했다.

지난 10년간 하이닉스의 여러 소송을 맡아온 OMM은 50~60명의 하이닉스 특허그룹 직원들과 함께 각 분야의 전략을 치밀하게 짰다. 협상을 맡은 특허라이센싱팀은 상대특허에 대해 비침해를 주장했다. 특허기술팀은 선행기술로 공세에 나섰고 특허개발팀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이들은 10년간 함께 땀방울을 흘렸다.

민경현 팀장은 “미국에서 주로 소송이 이뤄지다 보니 한국과 미국을 셔틀버스로 오가는 것처럼 잦은 이동을 했다”며 “일주일에 5일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주말 이틀 동안 회의한 후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어려웠던 점을 회상했다.

지난해 4월엔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에게도 낭보가 울려 퍼졌다. 2004년부터 6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 하니웰과의 LCD 기술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

하니웰은 2004년 10월부터 전 세계 LCD 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대부분의 업체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하니웰의 부당한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해 6년이 넘는 법리공방 끝에 승리를 거두게 됐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또 하니웰이 특허 무효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창만 있고 방패는 필요없는 특허괴물의 출현 =** 십수년 간 미국 내 특허등록 1위를 고수해 온 IMB은 1990년까지만 해도 특허기술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활용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3년 후 루이스 거스너가 CEO로 취임한 뒤에야 비로소 특허 중요성을 인지하게 됐다. 그 이후 IBM은 1등급 기술을 제외한 2~3등급 기술은 타사에 이전하며 로열티 수입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허가 제조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부상하면서 단순한 지적 자산 차원을 넘어 수익창출을 위한 매매수단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다. 글로벌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형이 아닌 무형자산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자 특허 등을 활용한 비즈니스가 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지난 2002년 2억 달러에 머물렀던 특허 판매시장 규모가 지난해에는 24억 달러로 늘었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특허소송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특허괴물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특허괴물은 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하지 않으면서 특허권만 갖고 다른 기업에게서 로열티를 받거나 특허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미국 인텔렉추얼 벤처스(IV)와 뉴 테크놀로지 프로덕츠(NTP) 등 주요 특허괴물은 막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도 특허 목록을 감추다가 대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하면 소송을 걸어 로열티를 빼앗는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10년간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기술에도 암암리에 특허를 대거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닉스와 소송을 벌였던 미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램버스도 대표적인 특허괴물이다.

특허괴물이 무서운 것은 창만 있고 방패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삼성과 애플이 특허전을 벌이면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지만, 특허괴물은 특허권 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해도 공격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괴물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경쟁사와 전세계에서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이 미국의 특허괴물 디지털트와 손잡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진흙탕 싸움으로 전략한 특허전에서 직접 발을 빼며 회사 이미지 제고를 노리는 동시에 애플에게 특허권을 양도받은 특허괴물을 이용, 삼성전자 등 경쟁사에 대한 전방위 공격을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디지털트드는 삼성전자, LG전자, HTC, 노키아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하이닉스-램버스 소송에서 보듯 특허괴물들은 실제로 상대 기업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자체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한 기

술이 특허 괴물들에 의해 특허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

#### 삼성-LG 특허전사 키운다 =

글로벌 기업 간 특허 분쟁 양상이 확산되자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특허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특허전문가 영입·양성, 특허 조직 보강 등을 통해 글로벌 견제세력에 대한 수비(특허 소송 방어)와 공격(선제 특허 소송)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미국 쉐컴에서 특허전문가로 맹활약했던 한인 변호사 유병호 씨를 상무급으로 영입, 최지성 부회장 직속 조직인 IP(지적재산권)센터의 기술분석팀에 배치했다. 유 상무는 지난 2008년 쉐컴이 세계 1위 휴대폰 회사인 노키아와 3년이 넘는 특허권 분쟁을 벌일 때 쉐컴의 승리를 이끈 주역이다.

유 상무가 배치된 삼성전자 IP센터는 엔지니어 출신의 미국 특허변호사 안승호 부사장이 총괄하고 있다. 그는 기술, 특허 및 법무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IP전문가다. 라이선싱과 특허매입 강화 등 공격적인 특허전략에 나서기 위해 지난해 말 임명됐다.

현재 IP센터 구성원을 포함해 특허 관리 인력은 450여 명에 달한다. 2005년 250명에서 두 배 가까이 증

가했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IP전략팀장을 지낸 김광준 전무가 법무팀을 이끌고 있다. 특히 차세대 주력사업인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관련 특허침해에 대해선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월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가 6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 하니웰과의 LCD 기술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 김 법무팀장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부당한 특허료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그룹은 전세계 특허전쟁에 맞설 특허전사 육성을 위해 각종 특허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한 ‘IP 칼리지’를 LG인화원과 공동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IP 칼리지’는 LG전자를 비롯,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생활건강 등 그룹 내 9개 계열사 특허조직으로 이뤄진 ‘LG 특허협의회’ 소속 특허담당자들을 세계 최고의 특허전문가로 키우기 위해 지난해 개설됐다.

사내전문가는 물론 변리사, 특허전문 변호사, 그리고 미국 특허변호사까지 화려한 경력의 강사진을 구축했다.

주요 과정은 특허일반, 특허개발, 특허분쟁, IP

English 등으로 구성됐으며, 신입사원을 포함한 전 특허담당 직원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초급과정부터 전문과정까지 세분화했다.

‘특허개발’ 과정에서는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특허를 발굴하는 기술을, ‘특허분쟁’ 과정에서는 소송, 협상, 계약 등 분쟁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전 기술을 습득한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이정환 부사장은 “세계 최고의 특허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종 특허 전문교육과정 활성화는 물론, 특허 전문인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도 특허열풍이 거세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그린카 시대’를 맞아 치열한 특허경쟁이 확산되자, 이에 대비한 특허전사 양성에 들어간 것. 특히 현대차그룹은 남양기술연구소 내 특허팀을 특허실로 격상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허실 격상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몽구 회장의 의지 외에도 조직 내부에서 특허전쟁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준비 작업이 급물살을 탔다고 알려졌다.

특허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2. 2





# 특허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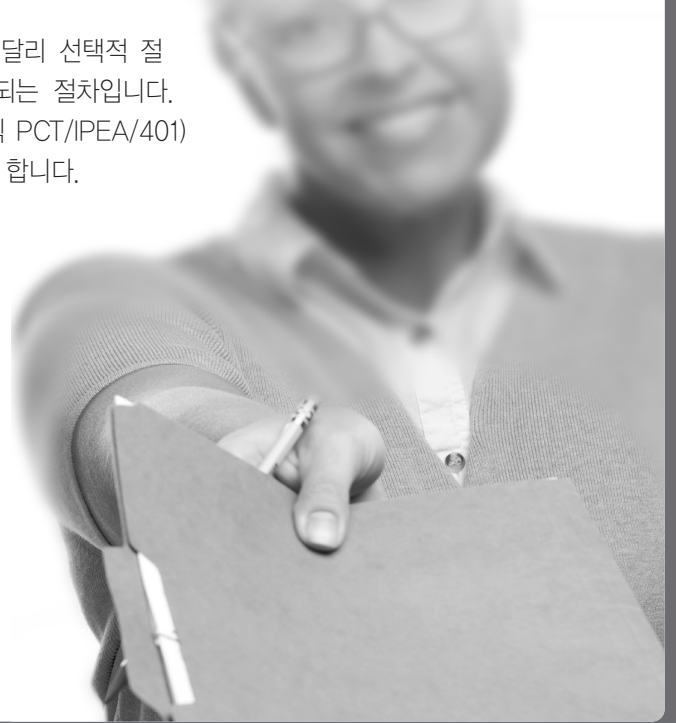
**Q.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출원인은 명백한 잘못과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A.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출원인은 국제사무국에 명백한 잘못의 신청서를 국제출원과 함께 공개하여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사무국에 의해 아직 국제출원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제출원의 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공개 요청을 하여야 하며 출원인은 별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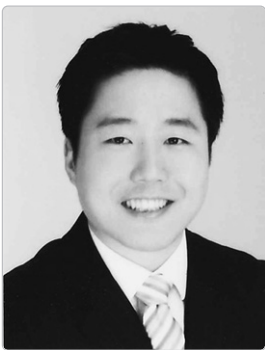
**Q. 국제예비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청구가 필요합니까?**

A. 국제예비심사절차는 필수절차인 국제조사와 달리 선택적 절차로 출원인이 별도의 청구를 하여야 개시되는 절차입니다.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 서식 PCT/IPEA/401)를 소정의 방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이길 수 있을까?

## 미국 특허소송의 대박 성공 신화



유 성 원  
知心 IP&Company 대표변리사

비가 올 때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와이퍼다. 자동차에 와이퍼가 없다면, 아마도 비오는 날에는 이곳 저곳에서 교통사고가 속출할 것이다. 자동차 와이퍼에서 가장 편리한 기능은 아마도 와이퍼가 움직이는 시간 간격을 마음대로 조절해서 비가 오는 양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기능일 것이다. 요즘은 어느 차량에나 기본 옵션으로 달려 있는 기능이다.

그렇다면, 이 시간 간격 조절 와이퍼를 누가 처음으로 발명했을까?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차량에 시간 간격 조절 와이퍼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

몇 년 전 개봉했던 영화 “Flash of Genius”에서는 바로 이 시간 간격 조절 와



이퍼를 발명하여 미국 최대의 자동차 기업인 Ford 사를 상대로 파란만장한 특허 소송을 벌였던 Robert William Kearns 교수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이 영화는 비록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한 개인이 변호사도 없이 홀홀단신으로 미국 거대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승리하는 아주 멋진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미국 법정에서 일어나는 특허 소송의 모습을 아주 잘 그려주고 있다.

Kearns 교수는 미국의 한 지방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다. Kearns 교수는 자신의 결혼식 파티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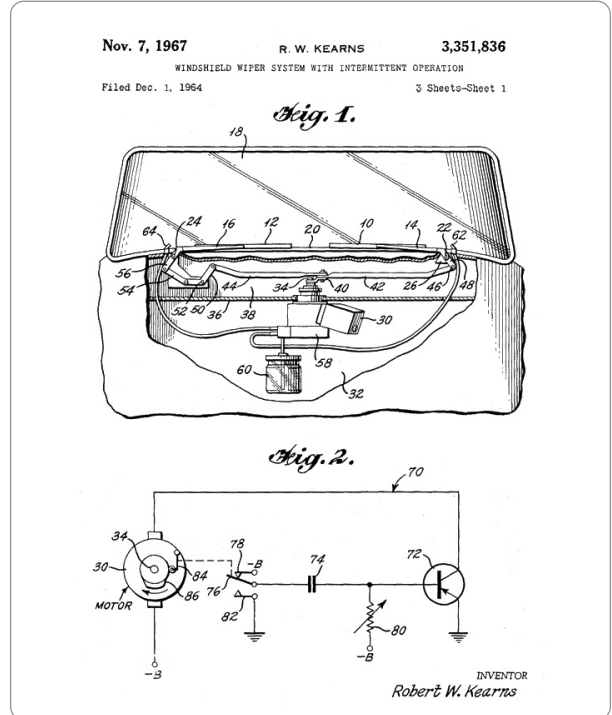
넉, 삼페인을 따다가 삼페인 코르크 마개에 눈을 맞아 서 한 쪽 시력을 거의 잃게 되는데, 향후 이 사건이 시간 간격 조절 와이퍼를 발명하는데 큰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된다.

한 쪽 시력이 손상된 후 약 10년 정도 지난 어느 비가 가볍게 오던 날, Kearns 교수는 Ford사의 Galaxie 모델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쉬지 않고 움직이는 와이퍼 블레이드는 이미 한쪽 눈이 거의 실명된 그의 시야를 상당히 방해하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아... 와이퍼가 좀 쉬어가면서 움직이면 좋을 텐데...’



집에 돌아온 Kearns 교수는 자신의 한 쪽 눈이 불규칙한 간격을 두고 깜빡이면서 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영감을 얻는다. 와이퍼 블레이드도 간격을 두고 움직이게 하고, 그 간격을 조절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실제로 시도해 보게 된다. 처음에는 기계적인 구조만 가지고 구현해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자 간단한 전기 회로를 결합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된다. 가변저항, 커패시터, 스위치, 트랜지스터 등의 간단한 조합의 전기 회로를 결합하여 시간 차를 두고 동작할 수 있는 와이퍼 블레이드를 설계하게 되는데, 바로 이 아이디어가 성공을 거두게 된다.

실제로 그가 특허 출원하여 등록받았던 미국 특허공보를 찾아보면, 시간 간격을 두고 동작하게 하는 전기



회로는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성공에 고무된 Kearns 교수는 특허출원을 마치고 당시 미국 최고의 자동차 회사였던 Ford 사의 기술진과 경영진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이 와이퍼 블레이드를 생산해서 납품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된다. Kearns 교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라이선싱보다는 자신이 직접 와이퍼 블레이드를 생산하고 싶어했는데, 이 고집은 소송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도 계속되었다.

한편, Ford사는 Kearns 교수의 발명 성공에 많이 놀랐지만, Kearns 교수의 아이디어를 사서 직접 공급 계약을 맺고 싶어하지는 않았다. 다만, Kearns 교수에게 제품 적합성 테스트를 위해서 필요하니 시제품과 제품 설계도를 넘겨달라고 한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Ford는 일방적으로 제품이 부적합하여 채택할 수 없다는 통보를 Kearns 교수에게 하고 만다. Kearns 교수는 이 계약 불발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다. Ford사와 당연히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생각하여 집을 저당 잡아 공장도 매입하고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로 잔뜩

사들여냈기 때문이었다.

그 후 Ford사는 자사의 대표 스포츠카인 Mustang의 신형 모델을 발표하는 신모델 발표회를 갖게 되는데, 이 발표회에서 Ford사는 시간간격 조절이 가능한 와이퍼 기능 옵션을 탑재한 신형 Mustang을 발표하게 된다. 즉, Ford사가 계약을 빌미로 Kearns 교수의 기술을 알아낸 뒤 Kearns 교수를 버리고 기술만 가져가버린 것이다.

Kearns 교수는 많은 방황 끝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특허권을 가지고 특허침해소송을 Ford사를 상대로 제기한다. 이 소송에서 Kearns 교수는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데, 누가봐도 거대 대기업을 상대로 한 개인이 변호사도 없이 소송을 한다는 것은 계란의 바위치기에 가까웠다.

미국의 특허소송은 우리나라와 달리 상당히 그 절차가 복잡한데, 한 개인이 이를 다 수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일단 특허소송이 제기되면 미국 소송 특유의 절차인 discovery(증거조사) 절차가 개시된다. Discovery 절차는 소송의 승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절차로서 원고와 피고 모두 승소를 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미국 특허소송에서는 Markman Hearing(마크맨 청문회)라는 특허청구범위의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심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Markman Hearing은 사실 심리 전에 법원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 후 사실심리가 진행되는 Trial(공판)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Trial은 Bench Trial(판사에 의한 재판)과 Jury Trial(배심원에 의한 재판)으로 나뉜다. 배심원에 의한 재판인 Jury Trial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다.

Kearns 교수는 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모두 자신의 아들과 함께 직접 수행한다. 그리고 무려 12년에 가까운 소송 끝에 1990년 Ford사로부터 무려 1,000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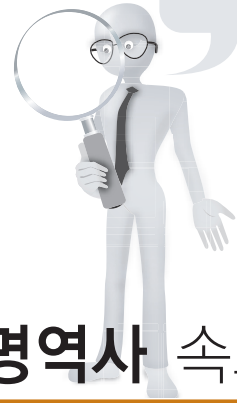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 배상 판결을 얻어내게 된다. 다만, Kearns 교수는 법원으로부터 Ford사가 고의적인 특허침해(willful infringement)를 했다는 판결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미국은 고의적인 특허침해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액을 증액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점은 대륙법 체계에 속하는 우리나라와 매우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다.

Kearns 교수는 Ford사 외에도 Chrysler 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에서도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무려 1,87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얻어냈다. 하지만, 연이은 GM, 토요타, Mercedes Benz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어이없게도 소송 기일을 지키지 못해서 패소를 하게된다.



Kearns 교수는 특허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발명과 권리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소송에서 직접 뛰어들어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거대 대기업을 상대로 승소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작은 개인이나 중소기업이라고 할 지라도 자신의 발명을 강하고 확실한 특허권을 보호하고 이를 지켜 낸다면 Kearns 교수와 같은 성공 신화를 또 다시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나라 발명가들과 기업들에게서도 Kearns 교수와 같은 대박 성공신화를 많이 접할 수 있기를 꿈꿔본다.

2012. 2 |



## 메넨의 파우더

고객의 불만을 경청하여 사업의 아이템을 획득

## 발명역사 속으로

○ 아용 파우더의 발명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독일의 게르하르트 메넨(Gerhard H. Mennen, 1856~1902)! 동네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그는 고객들의 불평·불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성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분이 영 신통치 않아요.”

동네에서 말이 많기로 소문난 바이슨 부인이 또 다시 심통을 부렸다. 그러자 그녀 옆에 있던 다른 부인들도 덩달아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다.

“맞아요! 우리 애는 발진 때문에 늘 고생인데 한 번도 효과를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시작된 동네 부인들의 불평은 한참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나 약국 주인인 메넨은 이들을 귀찮아한다거나 전혀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질문에 대꾸하고 되묻는 등 적극적이었다. 그는 늘 사업 구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인 부인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더 귀담아 들으려고 하였다.

‘품질 좋은 아기 파우더를 개발하기만 하면 크게 성공할거야. 이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발진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만 있겠어? 효과만 좋다면 팔리는 것은 따 놓은 당상이지.’

잠깐 생각을 정리한 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토록 갈망하던 새 사업 구상이 드디어 결정된 것이다.

‘부드러운 탄산 활석이라면 훌륭한 유아용 파우더가 될 거야!’

그는 오랜 약사 생활에서 얻은 경험이 있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것은 그가 가진 무기였다. 메넨은 약국에서 얻은 많은 재료들과 탄산 활석을 가지고 연구를 거듭했다. 이렇게 수천 번의 실험을 하며 여러 해가 지난 후, 그는 마침내 봉산과 이탈리아제 활석을 섞은 새로운 파우더의 합성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는 여기에다 좋은 냄새가 나도록 장미기름까지 넣어 상품의 질을 높였다.



▲ 메넨의 파우더 광고(1909)

이 새로운 파우더에 대한 인기는 메넨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잇달아 들어오는 주문에 메넨은 즐거운 비명을 지를 정도였다.

그러나 그것은 서곡에 지나지 않았다. 메넨은 더 큰 성공을 위해 대량판매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메넨은 다시 한번 사업가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그는 당시 마분지 포장뿐이었던 파우더 포장의 잘못된 점을 제대로 꿰뚫어 보고, 새로운 포장법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 아주 혁신적인 데다 견고한 형태의 포장 용기를 개발하였다.

‘튼튼한 용기로는 강통을 따를 것이 없지!’ 그는 당시 포장 용기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뜨리고, 자신의 파우더를 강통에 넣어 팔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보관의 기능을 넘어서, 강통에 작은 구멍을 뚫어 파우더가 술술 뿌려지도록 특별한 기능까지 덧붙인 아이디어 상품이었다. 이러한 포장 덕분인지 메넨의 파우더는 인기가 날로 높아 갔다.

# 발명과 특허 그리고 기술이전



차 준용  
한국발명진흥회 유통상담관

**새**해 연초가 되면 모두들 한 해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며, 실행에 옮긴다. 개인은 건강과 행복을 위해, 회사는 1년간의 매출 목표와 그에 따른 구체적 전략과 실행 방법을 계획한다. 1년 중 가장 희망이 넘치고 의욕적이며 바쁜 때가 1월이 아닌가 한다.

정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은 매년 1/4분기에 발명가 또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하는 많은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사업에 관한 신청과 접수를 진행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명과 특허 기술에 많은 시간과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발명가나 중소기업은 요즘이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동시에 바쁜 시간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발명가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시기도 요즘과 같은 연초일 것이다. 발명을 하고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그 특허를 활용한 수익을 창출하는 길은 왜 그리 요원하기만 한 것인가? 발명과 특허 제도의 본질 그리고 기술이전 시장의 현황을 검토하여 그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특허의 획득

발명을 완성하고 특허 출원을 하면 의견제출통지 및 의견서/보정서 제출 등을 수회 반복하는 복잡한 심사과정을 거쳐 특허 등록이 된다.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최근에는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며, 빨리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발명가들은 그동안의 고생과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특허 등록증을 받게 되는 것 자체에 상당한 성취감과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



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지난 과정을 거쳐 특허를 획득 하더라도 발명자에게 기대와 달리 별다른 경제적 또는 그 이외의 이득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명이 입장에서는 그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여의치 않은 환경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한다. 발명가가 직접 해당 특허 기술을 상용화 하여 성공적으로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2010년 국정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등록 특허 중 미활용 특허의 비율이 출연연 기준으로 75%에 육박하고 있다. 등록된 특허의 대부분이 매년 연차 등록료만 납부하면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많은 수의 특허를 보유하면서 유지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개인 발명가의 경우 별도의 어떤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발명에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생활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경우도 빈번히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발명 활동은 발명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발명 활동의 주체인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은 종종 국가가 발명가에게 특허권이라는 재산권을 취득하도록 장려하면서 그것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발명의 특성과 특허제도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한다.

### 발명과 특허 그리고 노하우

발명이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며, 이 중에서 특허 받은 발명을 '특허 발명'이라 한다. 자연 법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하며, 기술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 반드시 유형물일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즉, 발명은 추상적 관념으로서 실시 가능한 정도의 구체성을 구비해야 하고 새로운 것이면 족하다. 이러한 발명 중에서 특허의

일반 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심사를 통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외에도 선출원주의, 불특허 발명 등등 다양한 요건에 검토가 필요하다.

발명을 완성한 자가 특허 출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발명가의 노하우로서 비밀로 유지할 것인가는 발명가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이다. 특허권의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독점·배타적인 권리인 반면, 노하우는 발명가가 그 발명 내용을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비밀 상태로 유지되는 영업 활동에 유용한 경영상, 기술상 정보이다.

그 발명이 타인이 쉽게 모방할 수 없거나, 대체 기술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거나 장시간의 시행 착오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특허권을 확보하지 않고서도 해당 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한편 해당 발명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면서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다. 반대로 해당 발명을 적용한 제품을 통해 타인이 쉽게 유사한 기능의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다면 특허 출원을 통해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지위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전략적 선택의 발명가가 직접 자신의 발명을 사업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발명의 단계와 기술이전

발명가가 직접 사업화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가 없거나, 사업화를 도중에 포기하거나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허 출원을 통해 특허를 확보해야 용이하며 타인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기술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 그

런데 위 발명의 정의에서 언급했듯이 특허 발명은 실시 가능성을 구비한 추상적 관념이면 충분하다. 바꿔 말하면 발명이 특허 등록이 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발명이 특정 제품에 구체적,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용화를 위한 많은 연구, 개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기술의 수요자가 그 특허를 도입하는데 드는 비용 이상으로 많은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의 연구개발 정도에 즉, 아이디어단계, 설계단계, 목업(Mock-up), 시제품 단계, 상용화 단계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술료, 기술이전 가능성은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특허권 획득의 목표 달성이 아니라 기술이전을 위한 출발점에 선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특허 제도의 본질과 기술이전

특허법 제1조는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우리 특허법이 발명의 공익적 이용을 중시하여 발명의 창출 및 공개 뿐만 아니라 그 상용화를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허법은 공익을 위해 정책적 목적을 설정하고, 설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특허권을 보호하는 한편 특허권을 제한함으로써 양자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특허권을 양도 가능한 배타적권리로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물권적 재산권의 속성을 가지지만, 특허권의 효력 제한, 폭넓은 선사용권 인정, 강제실시권 인정 등 공익적 목적에 따른 권리의 제한 측면에서는 상업적 특권의 속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허제도의 본질 중 재산권적 속성을 중시하

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데,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권익을 강하게 보호하는 판결이 많아지고,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인정되며, 특허 침해 금지 등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가 용이하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기업은 자사 제품과 관련된 특허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 도입에 적극적일 것이다. 자연스럽게 특허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그에 따른 기술거래 및 사업화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반대로 공익적 목적에 의해 권리를 제한하는 상업적 특권의 속성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권리보다는 전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는 제한되고 그 만큼 특허권의 중요성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업 활동에서 특허권의 중요도는 감소하고, 기술거래 및 사업화 시장도 축소될 수 밖에 없다.

### 한국의 특허시장 특성과 기술이전

한국에서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심판에서 무효율이 70%를 넘고, 특허권자가 특허심판원에 상대방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경우 침해 성립률은 25%대에 불과하다.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이길 확률도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60%에 달하는 미국과는 아예 비교조차 안 되고, 프랑스 55%, 캐나다 38%에 비해서도 너무 낮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많은 기술료를 지불하면서 특허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없음은 자명하다. 어느 기업이든 특허가 없더라도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특허권자의 권리 주장에 적절히 대응하다 보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훨씬 높거나, 지게 되더라도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이 소송에 패소하여 지불하는 손해배상액보다 크게 된다면 기업에게는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 특허기술 거래를 위하여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발명가나 기업은 특허 등록이 기술 이전을 통한 수익 창출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기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는 해당 기술의 개발 단계, 수요 기업의 매출, 영업 이익, 경영자의 의지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다. 기술 보유자가 일방적으로 의사로는 기술이전을 성사시킬 수 없는 것이며, 적극적으로 수요자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허 제도는 본질적으로 공익과 사익의 속성을 모두 가지는 것이다. 특허권의 재산권적 속성에 집중하다 보면 특허괴물, 무분별한 특허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증가, 기술혁신 활동의 저해, 특허권자의 과도한 권리행사에 따른 부정 경쟁행위 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나치게 공익성을 강조하는 경우에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는 제한되고 그에 따라 특허권의 중요성은 희석될 것이며 궁극적인 목표인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 특허권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특허권 행사의 결과로 특허권자가 누릴 수 있는 실익이 너

무 적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특허의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여 등록을 어렵게 하더라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율을 낮추고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한다면 특허 기술거래 및 사업화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특허권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특허제도의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허 기술이 상용화되고 사업화에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의 단계를 거쳐야 하고,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어야 한다. 기술이 제품으로 활짝 피어나기 위해서는 시간, 비용, 노력이라는 자양분이 필요한데, 정부 부처나 지식재산 관련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을 들여다보면 그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지식기반 경제의 국가 경쟁력은 기술 및 지식의 보유 정도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활용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도모하는 발명가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2012. 2 |

# 2011년 대한민국을 웃겼던 예능 프로그램명, 상표권의 향방은?








전 소 정  
知心 IP&Company 상표팀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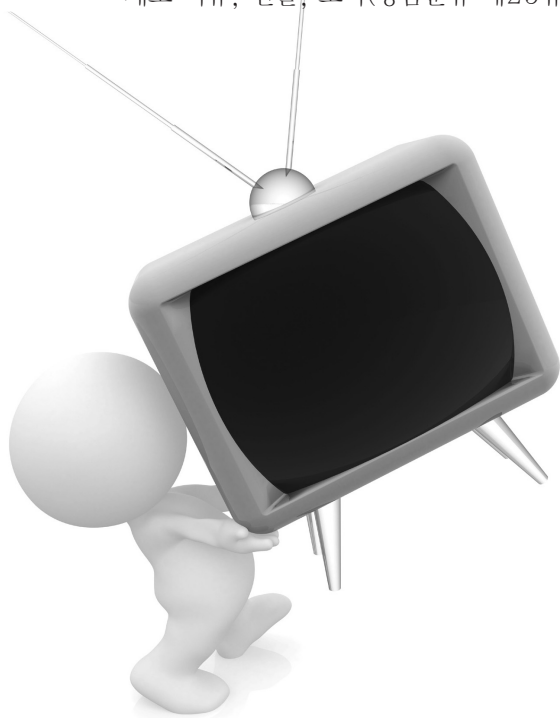
요즘 대세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스타나 정치인들은 이미지 실추를 걱정하여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는데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오히려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고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내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영화 또는 정치적인 이미지를 홍보하는 통로로서 예능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만큼 '홍보', '광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예능 프로그램의 명칭도 상업적으로 활용 가치가 크기 때문에 상표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필자 역시 예능 프로그램의 애청자 중 하나로서 이들 상표권이 프로그램 제작사에 있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여 2011년 대한민국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명들의 상표권 향방을 조사해 보았다.

## MBC '무한도전'

번호	권면이미지	출원(국제등록)번호 출원(국제등록)일자	공고번호 공고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무선용중앙번호 무선용중앙일자	상표분류	도항코드	출원인
1		4020080029941 (2008.06.18)	4020090017322 (2009.04.07)	4007953160000 (2009.07.15)		등록	16 18 21	주식회사 문 화방송
2		4020080051638 (2008.10.22)	4020110003479 (2011.01.20)	4008052010000 (2011.06.18)		등록	28 20 24 29 3 0 32 50305	주식회사 문 화방송
3		4120100032576 (2010.12.20)	4120110091677 (2011.12.07)			광고	41 250305	주식회사 문 화방송
4		4020110010045 (2011.02.28)	4020110089245 (2011.11.30)			광고	30 020101 020111 1 10105	주식회사 문 화방송
5		4020110018044 (2011.04.07)				출원	25 040521 240909 2 50305	주식회사 문 화방송

6		4020110018243 (2011.04.07)	출원	09	040521 249909 2 50305	주식회사 문 화방송
7		4020110024442 (2011.05.04)	출원	03	040521 249909 2 50305	주식회사 문 화방송
8		4120110022545 (2011.07.29)	출원	43	040521 249909 2 50305	주식회사 문 화방송
9		4020110052738 (2011.08.27)	출원	12	040521 249909 2 50305	주식회사 문 화방송

대한민국의 대표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무한도전의 상표권은 주요 상품분야에 대해서 무한도전의 제작사인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이 보유하고 있다. 무한도전은 2006년부터 방송을 시작했으나 2008년에 문화방송에서 서적/문구류(제16류), 악세서리류(제18류), 주방용기구(제21류)에 출원을 하였고, 다시 2009년에  로고 형태로 가구류(제20류), 직물류(제24류), 완구류(제28류), 음식, 음료수, 주류(제29류, 제30류, 제32류) 분야에 상표 출원을 하여 2011년에 등록을 완료하였다. 다만, 아쉽게도 의류, 신발, 모자(상품분류 제25류)



에 대해서는 한 개인 A씨가 2008년에 ‘무한도전’을 선등록하였고, 문화방송 측이 뒤늦게 의류 분야에도 2011년에 출원을 진행하였으나 A씨의 선등록으로 인해 등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방송 측과 A씨의 원만한 합의로 인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무한도전’ 로고가 그려진 모자, 티셔츠 등은 구경하기 어려울 것이다.

### KBS 해피선데이 1박 2일

번호	건명/이미지	출원(국제등록)번호 출원(국제등록)일자	공고번호 공고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우선권 주장번호 우선권 주장일자	상대상품분류	도형 코드	출원인	
1		4020100036017 (2010.07.09)	4020110047964 (2011.07.13)	4008959480000 (2011.12.23)		등록	09	010102 010315 05 0504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2		4020100015338 (2010.03.23)	4020110050628 (2011.07.21)	4008949120000 (2011.12.16)		등록	16	010102 010315 05 0504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3		4020090010454 (2008.03.05)	4020080067423 (2008.11.17)	4007957290000 (2008.04.13)		등록	16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4		4020090010453 (2008.03.05)	4020090016486 (2008.04.02)	4007959590000 (2008.06.29)		등록	09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5		4120080005799 (2008.03.05)	4120080066455 (2008.11.10)	4101807810000 (2008.02.02)		등록	41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케이비에스미디어의 ‘1박 2일’ 관련 상표권 보유 현황-kipris 검색 화면 캡처>

국민예능이라 할만큼 남녀노소를 불문한 전 연령층의 사랑을 끌고루 받았던 1박 2일은 시즌 1 종영을 앞두고 있다. 원래 ‘1박 2일’은 여행의 기간을 의미하는 말로서 다수인이 널리 사용하고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을 허용하기 어려운 식별력이 약한 표장이라 할 수 있다. 해피선데이 1박 2일 프로그램의 제작사인 케이비에스 미디어 주식회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 프로그램의 전체명인 ‘해피선데이’를 포함시켜 ‘해피선데이 1박 2일’이라는 상표명으로 2008년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교육업(제41류), 내려받기 가능한 프로그램 등(제9류), 서적/문구류(제16류)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여 2009년에 등록 받았다.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

‘1박 2일’이라는 이름을 케이비에스 측이 아닌 한 개인 B씨가 거의 모든 상품 분야에 출원 및 등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B씨는 해피선데이 1박2일의 로고체 그대로 모방하여 ‘**박2일**’로 상표 등록을 완료하였다. B씨는 ‘1박2일’ 뿐만 아니라 ‘해피선데이 1박 2일’, ‘펜션 1박2일’, ‘야생 1박 2일’, ‘야생 버라이어티 1박 2일’ 등 1박 2일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했던 유행어까지 함께 출원/등록을 해놓은 상태였으며, B씨가 ‘1박 2일’ 관련하여 출원한 상표는 총 57건이었다.



36	<b>1박2일</b>	4120110026331 (2011.08.31)		출원	43	280319 270503 270523	
37	펜션 <b>1박2일</b>	4120100021068 (2010.08.18)	4120110094846 (2011.12.16)	공고	43	270503 270525	
38	리얼 <b>1박2일</b>	4120110005137 (2011.02.26)	4120110098514 (2011.12.27)	공고	43	270503 270525	
39	야생버라이어티 <b>1박2일</b>	4120100011399 (2010.06.03)	4120110046365 (2011.07.07)	공고	43	270503 270525	
40	<b>1박2일</b>	4120080018154 (2008.07.02)	4120090017679 (2009.04.09)	등록	43	270503 270525	
41	야생 <b>1박2일</b>	4120110005138 (2011.02.26)	4120110098515 (2011.12.27)	공고	43	270503 270525	
42	PENSION <b>1박2일</b>	4120100021059 (2010.08.18)	4120120000023 (2012.01.03)	공고	43	270503 270525	

〈B씨가 보유한 1박2일 상표 현황-kipris 검색 화면 발췌 캡처〉

특히, B씨가 여행업, 숙박시설예약업 등과 관련하여 전문자격 입장에서 판단하더라도 식별력이 다소 약하다고 생각되는 ‘1박 2일’ 문자 자체로 등록받았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현재로서는 케이비에스와 B씨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B씨는 1박2일 펜카페와 ‘1박 2일’이라는 이름으로 음식점 및 펜션 체인점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상표권 침해 시 경고사항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게재 놓았다.



〈1박 2일 상표권자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화면 캡처〉

B씨의 이런 행태가 비록 상표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씨가 해피선데이 1박 2일 프로그램명의 로고체를 그대로 모방한 채로 상표 출원/등록을 한 점,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여 1박 2일 고유의 유행어가 된 용어들까지 출원한 점, 1박 2일이라는 상표명으로 영리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 마치 1박 2일 프로그램과 해당 음식점, 숙박업소가 연관성이 있다고 오인, 혼동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케이비에스가 상표권 관리를 너무나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1박 2일의 팬으로서 아쉽기만 하다.(단, 이러한 서술은 B씨가 케이비에스측과



KBS의 '해피투게더'는 외주 제작사가 상표 출원을 수 차례 시도하였으나 모두 거절결정된 상태이다. 한편, 개그 프로그램을 콘서트 형식으로 만들어 개그계의 새 바람을 불러 왔다가 최근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개그콘서트'는 식별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상표 출원을 했다가 거절결정되었다. 또한, MBC의 세바퀴(세상을 바꾸는 퀴즈)는 프로그램의 제작사인 MBC가 서적/문구류(제16류), 악세서리(제18류), 가정용 기구(제21류), 의류(제25류) 분야에 상표 등록을 완료하였다. 이 밖에도 MBC의 '놀러와' 역시 주요 상품 분야에서 상표권을 획득하였다.

예능 프로그램명의 상표권 보유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바로 상표 출원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에도 방송 시작한 지 대부분은 1~2년이 지나고 나서야 출원을 하여 주요 상품/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다.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작진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담겨 있는 프로그램이 그 명칭에 대한 독점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그 노력들이 희석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예능 프로그램은 이제 단순히 시청자들을 웃기는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서 창조되고, 상품으로 탄생되는 것이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된다는 점에서 그 명칭에 대한 상표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2012. 2 |

계약 관계에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다는 전제하의 가정하의 말이므로 만일 B씨와 케이비에스측이 어떠한 합의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논외로 할 일이다)

이 밖에도 최근 높은 시청률과 다수의 해외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SBS의 '런닝맨'은 현재 상표 출원을 하지 않았으며, 한 개인이 완구류(제28류)에 2010년 즈음 상표 출원을 하여 2011년에 상표 등록을 완료하였다.

# 미국 트레이드 드레스와 한국의 지식재산권제도 비교

미국 FTA 체결과 관련하여 상표권과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에 없는 미국 상표 제도인 '트레이드 드레스'와 국내 상표·디자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오 소 연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상표디자인사업팀

## 소리, 냄새에 이어 제품이 주는 인상도 보호받을 수 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산업재산권 내의 변화 안에서의 단연 큰 이슈는 상표권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상표법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데 눈에 띄는 점은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던 소리, 냄새와 같은 '비시각적' 상표의 등록이 미국특허청에서는 가능해 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민국 특허청에서도 한·미 FTA 발효에 앞서 2011년 12월 2일 자로 소리와 냄새 상표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법 조항을 마련하기도 했다.<sup>1)</sup>

그리고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지식재



Starbucks v. Xingbake 중국 내 스타벅스 로고와 관련한 트레이드 드레스 분쟁 사례

산권 분야의 큰 이슈였던 삼성·애플 간의 분쟁을 통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상품외장)’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품 전체의 시각적 이미지(visual image)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종합적인 인상(impression)을 트레이드 드레스라 정의하고 있다.<sup>2)</sup> 즉, 종합적 인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품의 크기, 외관, 형태, 소재, 도형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그 상품의 전체적인 독특한 개념을 나타내며 크게는 건물의 외관과 실내장식, 서비스 방식까지도 트레이드 드레스의 범주에 포함하기도 한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출원·등록과정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다수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형성된 개념이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외관의 모양, 색채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식별력<sup>3)</sup>’이 있는 일종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트레이드 드레스에서 권리화가 가능한 주된 대상은 상품의 모양이나 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이다. 이후 비교에서 알 수 있겠지만, 상품의 모양이나 포장 또는 용기는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신규성보다는 자타 상품과의 ‘식별력’이 우선이 된다는 점에서 상표의 본질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보호가 가능할까?**

국내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와 일부 비슷한 개념으로 1998년 3월 1일부로 시행된 상표법 개정을 통해 ‘입체상표’ 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호나 서비스 상표와 같이, 상품 또는 그 포장 등이 그 자체만으로도 제조사 혹은 브랜드를 알리고 자타 상품과 쉽게 구별된다면 상표로서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입체상표는 주로 포장형태나 기타 3차원적의(three dimensional) 상품 또는 그 포장의 형상과 그 형상에

기호·문자·도형 또는 색채를 결합한 상표를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정의하고 있는 입체상표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말했듯 상품 자체이거나 상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하는 경우, 두 번째는 KFC의 켄터키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 동상과 같이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식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입체적인 모형, 세 번째로는 ‘입체’ 상표라는 용어에서 내포하고 있듯이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 기호 또는 도형이 3차원의 입체적인 형태의 것을 포함한다.<sup>4)</sup>



1) 상표법 제2조(정의) 1항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2) Two Pesos Inc. v. Taco Cabana Inc. 사건(US, 112 S Ct 2753, 1922). 동 사건에서는 멕시코 스타일 식당의 외관과 장식을 화려한 색채의 벽화와 네온등과 그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였다고 판시하였다.  
 3) 식별력(상표) : 상표가 표칭하는 지정상품과 다른 영업자의 상품을 구별하게 할 수 있는 힘, 특별현저성 이라고도 함. ※출처 : 특허청 용어사전  
 4) 이길상, 입체상표 심사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21, 통권 제58호(2000.1), 특허청, 158면.

[입체상표의 유형]

<p>1. 상품 자체가거나 상품의 용기·포장에 해당하는 경우</p>	 <p>상표등록 제 400539281호 주식회사 빙그레</p>	 <p>상표등록 제 400804966호 더 코카콜라 컴파니</p>
<p>2.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식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입체적인 모형</p>	 <p>상표등록 제 410188813호 주식회사 대한항공</p>	 <p>상표등록 제 400567080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p>
<p>3.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 기호 또는 도형이 3차원의 입체적인 형태의 것</p>	 <p>상표등록 제 450033203호 골든 볼스 리미티드</p>	 <p>상표등록 제 450006274호 케이디다이아코리아(주)</p>

그러나 모든 유명 제품의 포장 또는 3차원적 입체 형상을 입체상표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제품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기술적(descriptive)'인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sup>5)</sup> 기술적인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해당 산업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입체상표에서 상품이나 포장의 형상이 그 품목의 사용에 필요

한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그 품목상품제조의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고안된 것이라면 이러한 형상은 '기능적(functional)'인 것이 되어 이 또한 상표로서 등록받지 못할 수 있다.<sup>6)</sup>

디자인권과의 차이점은?

색채와 형상이 조합된 독특한 입체적 상품들이라면 디자인권으로 등록도 가능하지 않을까, 디자인권과 입체상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선 보호 취지를 본다면 상표등록의 목적은 수요자간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의 염려가 없도록 하는 데 있고, 디자인 등록의 목적은 한정된 기간 동안 독점권을 인정함으로써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는 데 있다. 어떤 한 상품을 개발했다고 가정한다면, 제품이 출시되기 이전에는 기존에 없던 신규한 물품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 신청을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제품이 출시된 이후 그 상품의 인지도가 높아져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식별력'을 얻게 되면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디자인권은 현재 최대 15년이지만 디자인보호법개정 이후 최대 20년까지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표는 등

[상표권과 디자인권 중복보호의 예시]

 <p>[상표등록 제 400860253호(도형복합 상표)]</p>	 <p>[디자인등록 제 300555304호(라벨)]</p>
 <p>[상표등록 제 400815533호(입체상표)]</p>	 <p>[디자인등록 제 300522774호(음료포장용 병)]</p>

※출처: 디자인맵 (www.designmap.or.kr)



록 후 갱신에 따라 준 영구적으로 독점할 수 있다.

출원전략에 따라 입체상표와 디자인 모두에 출원하여 보호받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반드시 디자인을 상표보다 먼저 출원하거나 혹은 동시에 출원신청을 해야 한다. 상표로 먼저 출원한 뒤에 디자인으로 출원하려면 등록을 받으려는 물품의 '신규성'이 상실되어 사실상 등록이 어렵다. 따라서 중복보호를 고려한다면 디자인권을 우선으로 등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입체상표로 등록된 후에도 '불사용 취소심판제도'<sup>7)</sup>에 따라 지속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디자인권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까지 개정 이후 20년까지 연장 여부에 따라 권한의 유지 및 소유할 수 있다.

	디자인	상표
판단주체	- 유사판단(신규성, 선후원): 일반 수요자 - 용이창작성: 당업자	- 유사판단 : 일반 수요자
유사판단 기준	- 외관으로만 판단	- 외관, 칭호, 관념-동일/ 유사여부, 혼동가능성여부
존속기간	설정등록일~15년-(디자인보호법 개정 후)출원일~20년	설정등록일~10년(갱신에 의해 영속)
실시(사용)의무	실시의무 없음	사용의무 있음(불사용 취소심판제도)

※출처 : 문삼섭, "디자인권 창출 및 보호전략", (2011.06)

등록받고자 하는 물품 및 서비스의 성격 및 특성에 맞추어 산업재산권에 대한 선택적 출원 및 등록이 필요하다. 자신의 권리에 대한 탄탄한 안전대비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소송 등으로 인한 더 큰 시간적, 재산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학계에서도 국내 디자인의 보호와 산업발전을 위해 입체상표 및 디자인권의 보호범위 확대 등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연구와 발전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2012. 2 |

### 지식재산권 보호는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레이드 드레스를 비롯한 디자인과 브랜드의 보호는 상품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창작자 또는 출원인은 입체상표와 디자인권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 5) 상품에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6)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3호)
- 7)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문화산책

## 테즈카 오사무 특별전<아톰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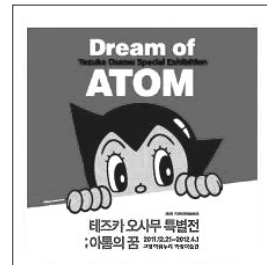
2011. 12. 21 ~ 2012. 4. 1

제2회 국제만화예술축제의 특별 초청전으로 기획된  
일본만화(Manga)의 神, 동양의 월트 디즈니,  
테즈카 오사무의 뛰어난 걸작품들의 국내 최초 원화전 개최!



국내에서 70, 80년대에 TV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된 『우주소년 아톰』(원제 : 철원 아톰), 『사파이어 왕자』(원제 : 리본의 기사), 『밀림의 왕자 레오』(원제 : 정글 대제)와 지금까지 만화책으로 출시되고 있는 『블랙잭』, 『아돌프에게 고한다』, 『불새』와 같은 대표 걸작 뿐만 아니라 국내에 미공개 된 많은 작품들의 드로잉, 채색 및 흑백의 원화, 복제화 등 500여 점의 원화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시대를 앞서가며 다가올 미래의 이슈들에 대해, 대중적 기호인 '만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설파한 '테즈카 오사무'. 냉정한 관찰과 분석, 판단에 근거한 미래에 대한 통찰, 만화가이기 이전에 한명의 진실한 예언자였음을 만나보는 "경이"(marvel)로운 전시.



공연장소 :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갤러리 누리  
공연기간 : 2011. 12. 21 ~ 2012. 4. 1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기획사 : (주)아르떼피아

## 제2회 국제만화예술축제

한국적 포스트팝(post-pop), 세계적인 작가주의 카투니스트(cartoonist)들을 만날 수 있는 놀랍고 Fun한 전시!

국제만화예술축제는 21세기 새로운 예술의 키워드인 '만화'와 '현대미술'의 다양하고 파격적인 작업들을 조망해볼 수 있는 아시아 최초의 시각예술축제로 기획, 2010년 12월 제1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2011년 제2회 행사는 '만화'를 철학적 메시지와 예술로 담아낸 "테즈카 오사무" 전시를 특별전으로 초청하였으며, 동시에 본 전시인 국제만화예술축제를 동 기간 갤러리누리에서 개최한다.

만화속에서 예술을 발견하고 예술 속에서 만화적 상상력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는 전시.

환경, 생태, 생명이란 주제 아래 국내에 카툰,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터, 현대미술 작가들의 드로잉, 회화, 조각, 설치 등 20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 Report

미국 개정법에 따른 First to File 제도 해설  
상표권의 권리범위(유사여부) 판단  
여기서 잠깐 \_ 독자마당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 등록제

# Report

# 미국 개정법에 따른 First to File 제도 해설

America Invents Act (이하 'AIA') 는 미국의 특허법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수정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규정이 변경되거나, 새로 제정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First-to-Invent (이하 'FTI')로부터 First-to-File (이하 'FTF') 제도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변화이다. 다만, 미국의 새로운 FTI 제도는 여타 국가의 선출원 제도와 선출원을 한 출원인이 특허를 취득하게 된다는 기본 성격은 공유하되, 예외 규정을 두어 궁극적으로는 사뭇 틀린 독특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독특한 규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FTI는 엄격하게 말해 First-Inventor-to-File (이하 'FITF') 이라 칭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여타국가와 달리 "Inventor"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여전히 종전의 "True Inventorship" 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따라서, First-to-File 이긴 하나, 여전히 진정한 발명자만이 특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함 윤 석<sup>1)</sup>  
Lowe Hauptman Ham & Berner LLP  
대표변호사 / SENIOR PARTNER

America Invents Act (이하 'AIA') 는 미국의 특허법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수정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규정이 변경되거나, 새로 제정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First-to-Invent(이하 'FTI') 로부터 First-to-File (이하 'FTF') 제도<sup>2)</sup>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변화이다.<sup>3)</sup> 다만, 미국의 새로운 FTF 제도는 여타 국가의 선출원 제도와 선출원을 한 출원인이 특허를 취득하게 된다는 기본 성격은 공유하되, 예외 규정을 두어 궁극적으로는 사뭇 틀린 독특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독특한 규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FTF는 엄격하게 말해 First-Inventor-to-File (이하 'FITF') 이라 칭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여타국가와 달리 "Inventor"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여전히 종전의 "True Inventorship" 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따라서, First-to-File 이긴 하나, 여전히 진정한 발명자만이 특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의 발명으로부터 기인한 발명자의 발명은 비록 최초 출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특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AIA에서는 출원일 이전 1년 이내에 발명자가 그 자신의 발명을 공

개한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Grace Period)를 채택하고 있다.

- 발명자의 공개일 이후 그리고 출원일 이전까지, 제3자가 출원을 하거나 해당 발명을 공개하는 경우, 이 제3자의 출원 혹은 공개는 발명자의 선공개에 의해 무력화되어, 발명자의 출원 건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되는 독특한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법의 FTI 제도와 AIA의 FITF 제도의 비교를 통해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여타 국가에서의 FTF 제도와의 비교하여 그 차이를 조명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AIA하에서의 신규성 조항 102(a)

#### <102(a) 원문>

Lowe Hauptman Ham & Berner, LLP

## New Definition of Prior Art

**Pre-AIA 35 U.S.C. 102**  
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

(a) the invention was known or used by others in this country, or patented or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in this or a foreign country, before the invention thereof by the applicant for patent, or

(b) the invention was patented or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in this or a foreign country or in public use or on sale in this country, more than one year prior to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or patent in the United States, or

(c) the invention was described in — (1) an application for patent, published under section 122(b), by another filed in the United States before the invention by the applicant for patent or (2) a patent granted on an application for patent by another filed in the United States before the invention by the applicant for patent, except that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iled under the treaty defined in section 351(a) shall have the effects for the purposes of this subsection of an application filed in the United States only i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designated the United States and was published under Article 2(2) of such treaty in the English language, or

**AIA: 35 U.S.C. § 102 (a)**  
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1) the claimed invention was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or in public use, on sale, or 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r

(2) the claimed invention was described in a patent ..., or in an application for [U.S.] patent published or deemed published ..., in which the patent or application, as the case may be, names another inventor and was effectively filed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표에서 좌측에는 현행법하에서의 신규성 관련 조항인 102(a), (b) 그리고 (e)를 보이고 있으며, 우측에는 AIA 하에서의 신규성 관련 조항인 102(a) 조항을 대비시켜 보이고 있다. 화살표로 보인 바와 같이, 현행법의 102(a)와 102(b)가 AIA의 102(a)(1)으로 합쳐 정리 되었고, 현행법의 102(e)가 AIA의 102(a)(2)로 새로 탄생하게 되었다.

현행법과 AIA의 신규성 관련 조항을 비교해 볼 때, 첫번째 중요한 변화는, 구법의 (a)와 (e)조항에서의 “before the invention”이 모두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로 변경되어 기준일이 더 이상 발명일이 아니라 출원일임을 보이고 있다. 즉, 선출원주의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두번째 변화는 현행법 102(a)에서 특허를 받지 못하는 조건이 발명일 이전에 “known or used by others in this country”로 명시되어 미국내로 지역적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AIA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제한을 두지 않고 전세계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출원일 이전에 해당 발명이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 known or used by others가 되었다면, 그 발명은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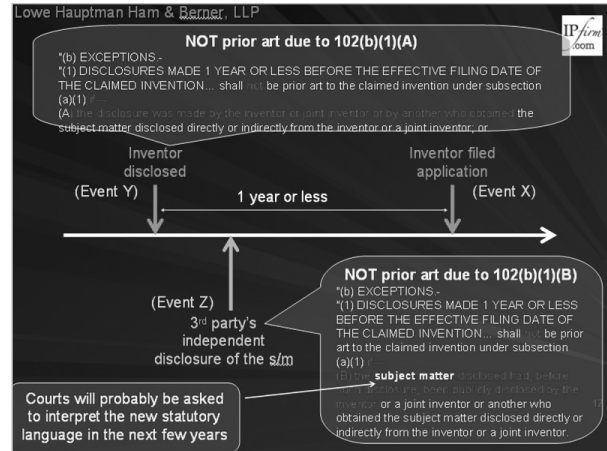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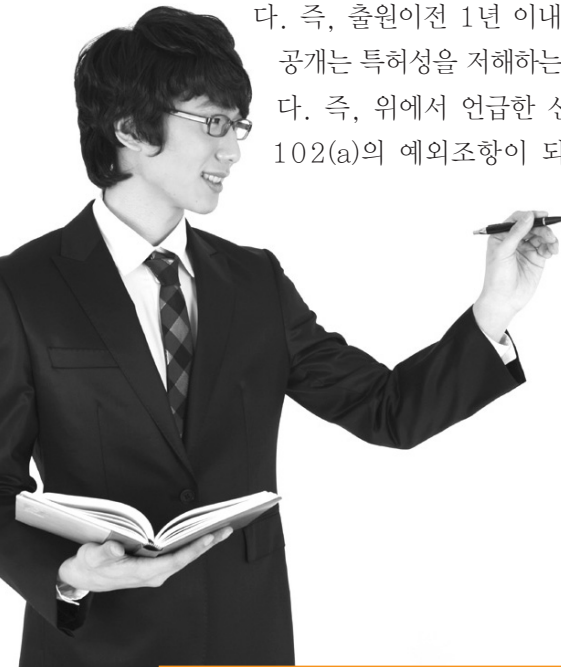
한편, 세번째 변화로는, 그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Hilmer Doctrine<sup>4)</sup>을 AIA에서는 폐지하고 있다.(102

- 함윤석 변호사는 미국특허청이 소재한 Virginia주의 지적재산권 전문 Law Firm인 Lowe Hauptman Ham & Berner, LLP의 대표변호사로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출원, 라이선싱 및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그는 Franklin Pierce Law School에서 Juris Doctor와 지적재산권 석사(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학위를 받았으며, 고려대학교에서 공학석사와 공학학사 학위를 받았다. (본기고에 대한 문의는 yham@ipfirm.com 또는 Tel : 1-703-535-7340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First To File 제도에 관한 조항은 2013년 3월 16일부터 유효하다.
- 이 AIA 법에 대해서는 이미 발명특허지 2011년 11월 호에서 소개한 바 있다.

(a)(2)) 현행법의 102(e)<sup>5)</sup>에서는 선행기술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1)조에서는 미국에 출원되어 공개가 된 특허 출원, (2)조에서는 미국에 출원되어 특허가 된 발명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PCT를 통한 국제출원의 경우도 영어로 공개가 된 경우에만, 선행기술로의 우선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즉, 외국의 우선출원일을 방어용으로는 사용가능하나 공격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평등한 판례는 AIA하에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비록 국제출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어로 공개가 되지 않은 경우는 선행기술로서 102(e) 참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도 AIA하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미국출원의 우선출원이 되는 외국우선권 출원은 언어의 제한 없이, 공격용으로도 방어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복잡했던 현재의 102(e) 조항이 간략화된 102(a)(2)로 개정되었다.

## Grace Period (Prior Art Exception)

Grace Period를 제공하는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AIA도 1년간의 Grace Period를 허용하고 있다. 즉, 출원이전 1년 이내에 발명자에 의한 공개는 특허성을 저해하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 즉, 위에서 언급한 신규성 상실조항인 102(a)의 예외조항이 되는 것이며, 이는 102(b)(1)(A) 및 102(b)(2)(B)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예외조항들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위의 도표를 사용하여 설명코자 한다.



먼저, 이 도표에서의 fact를 보기로 하자. 발명자가 출원(Event X)하기 이전, 일 년 이내의 기한 내에 스스로 공개(Event Y)를 하였다. 한편, 발명자의 공개 이후 제3자가 독자적으로 해당 발명을 공개(Event Z)하였다. 이러한 경우, AIA하에서 예외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자.

발명자의 공개(Event Y)와 관련,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공개가 이루어진 이후 1년 이내에 출원을 하였다면, 102(b)(1)(A)에 의해 예외가 인정되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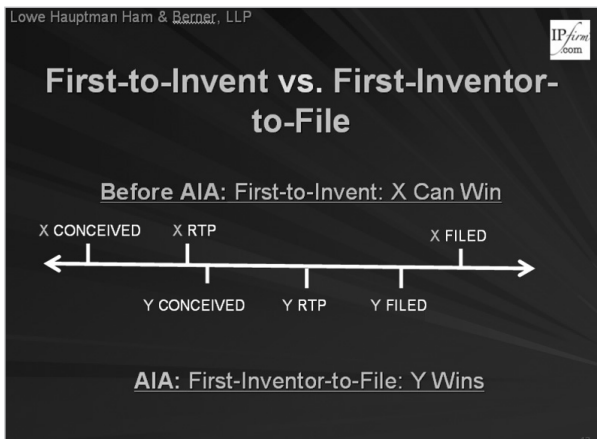
다음으로 위의 도표에서 보인 바와 같이, 발명자의 공개이후 제3자가 독립적으로 공개(Event Z)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독특한 제도를 102(b)(1)(B)에 제공하고 있다. 통상적인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제3자가 발명자의 출원일 이전에 발명을 공개했다면, 이는 이미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AIA하에서는 발명자가 공개(Event Y)를 하고, 1년 이내에 미국 출원(Event X)을 한다면, 공개시점과 출원시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제3자의 출원 혹은 공개(Event Z)는 발명자의 신규성을 상실시키지 못하게 되며, 이는 102(b)(1)(B)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3rd party’s independent disclosure of the subject matter”의 “subject matter”의 범위가 어디까지 발명의 내용을 포함하는지, 그리고 그 제3자의 공개내용과 출원발명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겹쳐야 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AIA에서 아직 규정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관한 여러 법원의 추후 판례 혹은 국회의 후속 법안 등에 의해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Chart 를 이용한 비교**

AIA의 핵심 내용인 FITF 제도의 이해를 돕고자, 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FTI 제도와 개정 후 특허법인 FITF 제도를 다음의 여러 시나리오 차트를 통해 비교 및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마지막 차트에서는 일반적인 FITF 제도도 같이 비교하여 보았다.

〈Ch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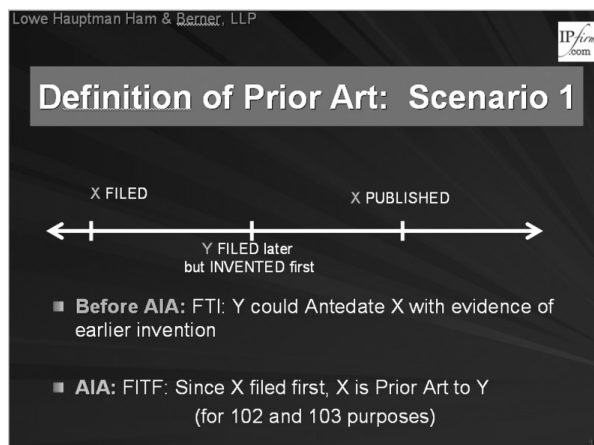


첫 번째 차트에서 Fact를 살펴보면, X,Y가 순서대로 각각 발명을 구상하고, 발명을 완성하였으나, Y가 먼저 출원한 후 X가 나중에 출원하였다. RTP는 Reduction To Practice로서 발명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 차트와 관련, 현행법하에서는 선발명주의이므로,

발명을 먼저 착상하고 완성한 X가 특허를 받게 된다. 그러나, AIA법 하에서는 일단 누가 먼저 출원을 하였는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 차트에서는 비록 X가 먼저 발명을 착상했다라도 Y가 먼저 출원했기 때문에 Y가 특허를 받게 된다. 이 첫번째 차트는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를 명확히 구분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Ch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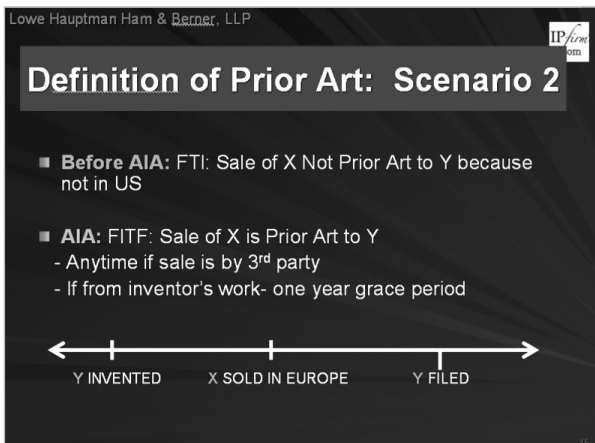
두 번째 차트의 Fact를 보자. X가 출원을 하고 그의 발명이 추후에 공개가 되었다. 한편, Y는 X보다 늦게 출원을 하였지만 X보다는 먼저 발명을 하였고, X 출원

- 4) An application’s foreign filing date under §119 could be used to antedate prior art but could not be used as affirmative prior art under current §102(e). In re Hilmer, 53 C.C.P.A. 1288. (1996). 즉, 외국출원일은 공격용으로는 사용가능하나 방어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임(“a foreign priority claim can be used as a shield against intervening prior art, but not as a sword against intervening inventions.”).
- 5) §102(e) : (1) 출원인의 발명 전에 타인에 의해 미국에 특허출원되어 122(b) 규정하에 공개된 특허출원 또는 (2) 출원인의 발명 전에 타인에 의하여 미국에 특허출원되어 등록된 특허에 기재된 발명인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51(a)조 규정의 조약에 따라 제출된 국제출원의 경우,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으로서 조약 21(2)(a) 규정하에 영어로 공개된 경우에만 미국에 제출된 출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의 공개일보다는 먼저 출원이 되었다.

이 차트와 관련, 현행법하에서는 선발명주의이므로, Y가 먼저 발명했다는 증거와 함께 §131 declaration<sup>6)</sup>을 제출하게 되면, X를 선행기술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Y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IA 하에서는 일단 누가 먼저 출원을 하였는가가 중요하기에 X의 선출원이 우선권을 갖게 되고, 따라서 X는 Y의 선행기술이 되어 신규성<sup>7)</sup> 및 진보성<sup>8)</sup> 측면에서 Y의 특허성을 검증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만약 X와 Y의 출원내용이 같다면 X가 특허를 취득하게 된다.

〈Char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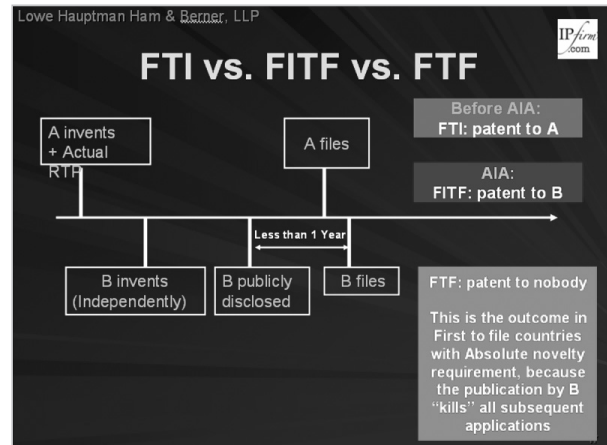
세 번째 차트의 경우, Y가 최초 발명자이나 미국 출원일 이전에 X가 유럽에서 발명품을 판매한 경우이다. 최초로 발명을 한 Y가 X의 제품판매 이후에 미국 특허청에 출원을 한 경우이다.

현행법하에서는 특허성을 저해하는 조건이, 발명일 이전에 제3자에 의한 “known or used by others in this country”라는 조건이 미국 내로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X의 판매행위는 Y의 특허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한편, X에 의한 제품 판매가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선발명주의인 현행법하에서 Y는 최

초발명자이므로, X의 제품판매 이전에 발명을 했다는 증거와 함께 §131 declaration을 제출하게 되면,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AIA하에서는 “known or used by others”에 대한 지역적 제한이 없이,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제 3자의 행위가 특허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X의 행위로 인해 Y는 특허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X가 제3자가 아니고 Y와 같은 기업에 소속한 사람이거나 대리인이며, 이 판매행위가 출원일 이전 1년 이내에 행해진 것이라면 Grace Period가 적용되어, Y는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Chart 4〉



이 차트에서 Fact를 먼저 살펴보자. A가 먼저 발명을 착상하고 완성한 후, B가 발명을 하였고, B가 해당 발명을 공개하였다. 그 후, A가 출원을 하고 B가 뒤이어 출원을 하였다.

이 차트가 아마도 가장 복잡하면서도, FTI, FITF 및 FTF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한다. 먼저, FTI를 채택하는 현행법하에서는 선발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초 발명자인 A가 특허를 받게 된다.

그러나 AIA하에서는 누가 발명했는지 중요하지 않

고, 누가 출원을 먼저 했는지가 중요하게 된다. 위의 예에서는 A가 먼저 출원을 했기때문에 A가 특허를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에서 Grace Period와 관련한 내용에서 보인 바와 같이, 후출원자가 선출원자 이전에 공개를 한 경우에는 102(b)(1)(B)에 의한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즉, B가 공개를 한 이후에 A가 출원을 하였기 때문에 A의 출원은 B의 선공개로 인해 신규성을 상실하게 되고 또한 A의 선출원은 B의 선행기술이 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물론, A는 공개가 된 이후에 B에 대한 선행기술로 사용될 것이나, B가 A의 출원 이전에 공개했다는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 A를 선행기술 대상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다), B가 최종적으로 특허를 취득하게 된다.

한편, 통상적인 FTF를 채택하는 다른 국가의 제도에 대해서는 아무도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A의 출원에 대해서는 B의 선공개가 선행기술이 되기 때문이며, B출원에 대해서는 A출원이 선행기술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 차트를 종합해 정리해보면, FTI하에서는 누구든 먼저 발명한 사람이 특허를 획득하게 되며, FITF하에서는 누구든 먼저 출원한 사람이 특허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단, “공개”라는 fact가 발생하게 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즉, B가 출원일 이전 1년 이내에 공개를 한 경우에는 A가 비록 선출원자이긴 하나, B의 공개일 이후에 출원하였기 때문에, 예외규정에 의해 A의 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하며, B는 후출원자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FITF의 가장 독특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 AIA에 비춘 전략 및 결론

새로운 미 특허법인 AIA의 FITF 시스템은 선출원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와는 달리 여전히 진정한 발명자의 개념을 중요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AIA하에서는 한국 내의 출원일도 Effective Filing Date이 되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조기에 출원 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한국출원일이 Effective Filing Date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출원 명세서가 미국의 명세서 요건<sup>9)</sup>을 만족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 내에서 우선 출원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소한 provisional application을 제출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발명자의 공개일 이후 그리고 출원일 이전까지, 제3자가 출원을 하거나 해당 발명을 공개하는 경우, 이 제3자의 출원 혹은 공개는 발명자의 선공개에 의해 무력화되어, 발명자의 출원건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되긴 하나, 일단 공개가 되면 absolute novelty를 채택하는 유럽과 중국 등지에서는 특허를 영원히 획득할 수 없게 되므로 출원 이전에 공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가급적 출원 이후에 발명을 공개토록 하고, 만약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일단 공개를 하게 되었다면, 1년 이내에 미국 출원을 해야 한다. 그 경우에는 공개시점과 출원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제3자의 출원 혹은 공개는 선행기술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012. 2 |

6) 37 CFR §1.131

7) 35 U.S.C. §102


8) 35 U.S.C. §103

9) 35 U.S.C. Sec.112. First and second paragraphs : The specification shall contain a written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and of the manner and process of making and using it, in such full, clear, concise, and exact terms as to enable any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which it pertains, or with which it is most nearly connected, to make and use the same, and shall set forth the best mode contemplated by the inventor of carrying out his invention. The specification shall conclude with one or more claims particularly pointing out and distinctly claiming the subject matter which the applicant regards as his invention.

# 상표권의 권리범위(유사여부) 판단

## 【사실관계】

갑은 등록상표 “SILK THERAPY”(지정상품: 헤어컨디셔너, 헤어모이스처라이저)의 상표권자이다.

을은 모발영양공급제품에 “”의 표장을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을의 사용표장은 갑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인가? (관련판례 : 2010허8023 권리범위확인)



손 지원

H&H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I. 서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41①),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권(專用權)으로서의 적극적 효력과 권원없는 타인의 무단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禁止權)으로서의 소극적 효력으로 구성된다. 즉, 상표권의 본래적인 효력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지만, 상표법은 상표권의 전용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상품출처에 대한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배타적인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등록상표 및 지정상품과 유사한 범위에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50, §66① i)

사실 상표권의 배타적 효력이 동일 영역에만 미치는가 유사영역에까지 미치는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상표법은 상품의 출처혼동 방지라는 실제적 필요에 따라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유사영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 및 상품의 유사는 상표권의 배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출원단계에서는 등록요건의 판단, 상표 등록 후에는 상표권의 침해 여부의 판단 등)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 근거가 되며, 상표법의 전 영역에 걸쳐 요구되는 핵심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상표법은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의 실재를 따지지 않고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하고, 혼동가능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

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발생한다고 하는 형식적, 획일적 기준에 입각하여 등록상표를 정형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 II. 상품의 동일과 유사

### 1 상품의 동일

상품학상의 상품이란 자연생산물과 기술생산품을 포괄한 상업의 객체로서 실체적·가동(可動)적·거래적·실질적인 경제재질을 말하나, 상표법상 상품의 동일이란 이에 의해 판단할 수는 없으며 상표법상 각 규정의 취지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즉, 상표법상 상품의 동일이란 두 개의 상품을 대비하였을 경우 상품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말하나, 물리적·화학적으로 동일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상품의 동일여부의 판단은 상품의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거래상태와 거래통념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칼라TV와 흑백TV, 손목시계와 탁상시계는 동일한 상품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으나, 방한용장갑과 의료용장갑, 가사용장갑은 상표법상 동일한 상품이 될 수 없다.

### 2 상품의 유사

상품의 유사란 두 개의 상품이 동일한 정도는 아니지만 거래사회에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근사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구체적인 유사 판단과 관련하여 상표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상품 고유의 입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절대적 판정설)와 상품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상품의 출처를 혼동



하게 할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상대적 판정설)로 나뉘고 있다.<sup>1)</sup>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상품의 유사개념도 상표의 유사개념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출처 혼동의 기준으로 세우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에 따라 상표권의 권리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한편으로는 상표와 연관하여 정해져야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관계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대적 판정설에 의하되 되도록 객관적·추상적으로 정해질 것이 요구된다.<sup>2)</sup>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1) 송영식 외 2인, 상표법, 597면  
 2) 최성우, OVA 상표법, 한국특허아카데미, 162면  
 3) 대법원 1998.7.28. 선고 97후1658 판결 등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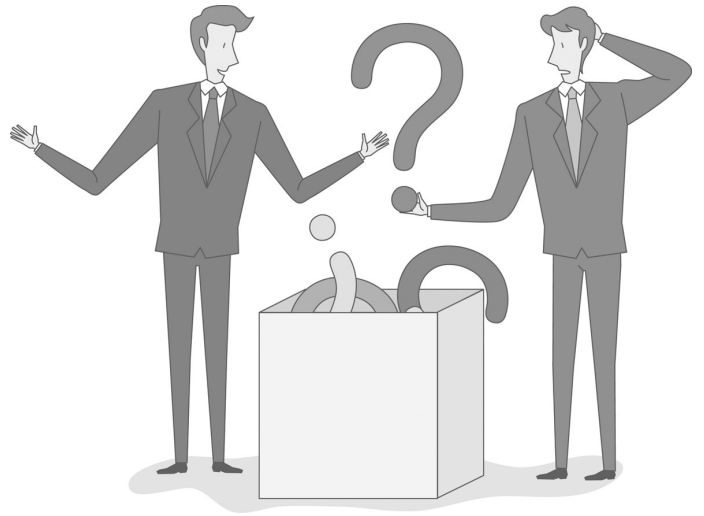
다는 태도이다.<sup>3)</sup>

특허청의 심사단계에서는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 구분이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10③), 심사의 신속성, 공정성 및 통일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상품류 구분을 기준으로 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판례는 상품류 구분은 상표 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상품류 구분 중 같은 류별에 속해 있다고 하여 동종·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사법적 구속력을 부인한다.

구체적 판단을 살펴보면, ‘잉크 카트리지’와 ‘프린터’의 경우에 ‘잉크 카트리지’는 ‘프린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잉크 카트리지’는 완성된 ‘프린터’의 하나의 부품인 점, 두 상품 모두 컴퓨터에 연결되어 인쇄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점, 컴퓨터 ‘프린터’의 기종에 따라 ‘잉크 카트리지’의 규격 등이 달라 ‘프린터’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잉크 카트리지’도 제조하고 있는 것이 보통인 점, ‘프린터’ 판매점에서 ‘잉크 카트리지’도 판매하고 있는 등 유통경로도 비슷한 점, 수요자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로서 동일한 점에서 ‘프린터’와 ‘잉크 카트리지’에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동일한 상표권자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유사한 상품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sup>4)</sup>

이에 반해, ‘전기이불’과 ‘이불’의 경우에 생산처나 제조방법에 있어 전기제품으로서의 침구류는 일반침구류에 비하여 전열선과 내열성 절연물을 재료로서 사용하고 안전성을 특별히 고려하여 제조되므로 양자는 동일한 업체에서 제조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반침구류인 ‘이불’과 전기제품인 ‘전기이불’은 형상, 용도 및 거래 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하여

도 품질 면에서 동일한 영업체에서 제조된다고 볼 사정이 없어 그들의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때에 동일업체에서 제조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sup>5)</sup>



### Ⅲ. 상표의 동일과 유사

#### 1 상표의 동일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나, 등록상표를 확대·축소한 상표는 물론이고 사회통념상 거래사회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도의 상표를 포함한다. 상표의 ‘동일’의 개념은 ‘동일성’의 개념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유사’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각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권리의 발생과 관련된 경우(§6②)에는 상대적으로 좁게 보아야 하겠지만, 권리의 유지를 위한 경우(§73①iii)에는 동일

범위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권리의 안정을 꾀함이 타당할 것이다.<sup>6)</sup>

## 2 상표의 유사

### 1) 상표의 유사성의 의미

상표의 유사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근사하여 이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거래통념상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상품출처의 혼동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주류적인 학설 및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태도이다.

### 2) 유사판단의 요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요소에 의하여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이들 세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면 상품의 출처가 혼동될 염려가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보게 된다. 다만, 상표의 유사여부는 궁극적으로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상품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유사 상표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sup>7)</sup>

광고선전 매체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는 칭호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sup>8)</sup> 특히 조어상표의 경우에는 관념에 의한 판단이 거의 고려되지 않으므로 칭호에 의하여 일반수요자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짧은 음절로 구성된 문자상표는 칭호 중 첫음절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한다.<sup>9)</sup>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sup>10)</sup>

도형상표의 경우에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고 할 것이므로 도형상표에 있어서는 외관의 유사여부가 가장 중요하다.<sup>11)</sup> 특히 색채가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된 경우에는 상표의 외관유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관념유사란 대비되는 상표가 가지는 의미, 관념, 사상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지각적 요인의 유사를 말한다. 이는 양 상표의 의미가 언어학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상표에서 다른 상표를 직감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다만,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sup>12)</sup>

### 3) 판단방법

상표는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유사판단은 대비되는 양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칭호·관념을 비교 검토

4) 대법원 2003.9.26. 선고 2003도2386 판결

5) 대법원 1994.1.14. 선고 93후1032 판결

6) 최성우, 앞의 책, 165면

7) 대법원 1997.2.28. 선고 96후896 판결, 대법원 2002.4.12. 선고 2001후683 판결 등

8) 대법원 1997.2.28. 선고 96후931 판결

9) 대법원 1998.3.27. 선고 97후1535 판결

10)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후2093 판결

11) 대법원 2000.12.26. 선고 98도2743 판결

12) 대법원 1992.10.23. 선고 92후896 판결

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할 따름이다. 즉, 전체관찰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구성요소의 각 부분만을 추출하여 비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한다고 함은 i) 상표가 2이상의 요부로 구성된 것으로서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각각 대비 판단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분리관찰의 법리), ii)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부기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식별력이 있는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할 수 있음(요부관찰의 법리)을 의미한다.

분리관찰이란 결합된 상표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구성부분 중 일부 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는 법리이다. 다만, 분리관찰은 어디까지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경우에 한하고, i)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 ii)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관념이나 조어가 형성된 경우, iii) 당해 상표가 거래사회에서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상표의 일부분만으로는 그 상표의 동일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리관찰을 할 수 없다.

구체적인 예로 ‘생안드레’와 ‘Andre Kim’이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 판례는 ‘생안드레’는 불어 ‘Saint Andre’의 한글음으로서 ‘성 안드레’를 일컫는다고 할 것이고 생

(Saint)은 존칭을 표시하므로 출원상표는 ‘생안드레’ 또는 ‘안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며, ‘Andre Kim’ 또한 ‘Andre’와 ‘Kim’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안드레’ 또는 ‘안드레 김’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두 상표 모두 ‘안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범위 내에서는 동일하고,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것이어서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시하였다.<sup>13)</sup>

이에 반해 ‘NUTRACEUTICALS’와 ‘NUTRA’가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NUTRACEUTICALS’는 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 중 ‘NUTRA’는 ‘중립의’, ‘공평한’ 등의 의미를 가지는 ‘NEUTRAL’과 알파벳 5자가 공통하고 발음도 유사하게 청감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알파벳 ‘P’ 및 ‘L’의 있고 없음의 차이가 있고 그 의미에 있어서도 별다른 뜻이 없는 ‘NUTRA’와 ‘NEUTRAL’은 전혀 상이하여,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생소한 조어인 ‘NUTRA’가 알기 쉬운 ‘NEUTRAL’라는 단어에서 단지 알파벳 일부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나머지 구성부분인 ‘CEUTICALS’보다 친숙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NUTRA’ 부분과 ‘CEUTICALS’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인식되고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상표의 구성이나 발음이 길고 또 우리나라의 언어관행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이 그 호칭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생소한 경우에는 특징적인 어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비유사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sup>14)</sup>

요부관찰이란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쉽고 그러한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

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법리이다. 즉, 상표의 구성요소 중 기술적 표장 등과 같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 독점적응성이 없는 부분은 상표의 요부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부분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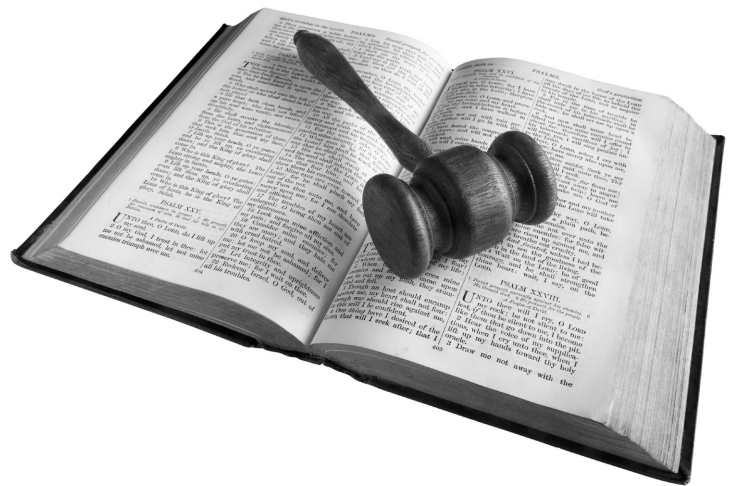
구체적인 예로 ‘칼라2중주, 우린소중하잖아요’와 ‘로레알, 전 소중하니까요.’가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 판례는 ‘로레알, 전 소중하니까요.’의 구성 중 ‘전 소중하니까요.’ 부분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있다기보다는 상품구매를 권유하는 압축된 설명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제외한 ‘로레알’ 부분만 요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 상표는 비유사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sup>13)</sup>

이외에도 불확실한 기억을 토대로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상표를 접하는 일반수요자들이 상표를 착각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격적 관찰과, 상표 자체의 구성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상표 소유자의 주관적 희망이나 의사 등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객관적 관찰을 해야 한다.

#### 4)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여부는 일반적 출처혼동의 우려가 있는 범위를 객관적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당해 지정상품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의 보통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정상품이 전문의약품인 경우에는 그 주된 수요자들인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 계층의 영어교육수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일반의약품인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요자 층을 전문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그들의 교육수준이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유사판단시 상표의 요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심사 단계에서는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의 경우에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는 상표법에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상표의 유부에 의한 혼동의 염려 유무는 상품거래의 실정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결시,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침해행위가 행하여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IV. 본 판례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① ‘SILK’는 ‘비단, 견사’ 등의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비단결 같은 머릿결’이라는 표현이 ‘매우 곱고 부드러운 머릿결’이라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보면, ‘SILK’는

13) 대법원 1992.6.9. 선고 92후322 판결  
 14)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1후1198 판결  
 15) 대법원 2006.5.25. 선고 2004후912 판결

그 지정상품인 ‘헤어컨디셔너, 헤어모이스처라이저’와 관련하여 ‘비단결 같은 머리’라는 의미로 직감될 뿐만 아니라, ‘SILK’를 포함한 다수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른 권리자들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② ‘THERAPY’는 ‘치료, 요법’ 등의 뜻이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앞부분의 ‘SILK’와 결합하여 ‘비단결 같은 머릿결로 만들어주는 요법’ 등의 의미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THERAPY’를 포함한 다수



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른 권리자들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결국 ‘SILK’와 ‘THERAPY’ 모두 요부가 되거나 분리 관찰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되어야 하고, 확인대상표장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SILKY’나 ‘THERAPY’가 요부가 되거나 분리 관찰될 수 없고 전체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 ‘**SILK THERAPY**’는 영단어 ‘SILK’와 ‘THERAPY’가 결합된 문자상표이고, 확인대상표장 은 어두운색 직사각형 바탕의 상단부분에는 ‘I SILKY MULTI’, 중간 오른쪽에는 ‘THERAPY’의 밝은 색 영문자가 배치되어 있고, 하단 오른쪽에는 작은 밝은 색 직사각형 안에 어두운 색 ‘PROFESSIONAL’ 영문자가 배치되어 있는 문자와 도형의 결합 표장으로서, 양 표장은 외관이 현저하게 다

르다.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실크 테라피’, ‘실크 쉼라피’, ‘쉴크 테라피’ 또는 ‘쉴크 쉼라피’ 등으로 5음절로 호칭되나, 확인대상표장은 ‘아이 실키 멀티 테라피’, ‘아이 실키 멀티 쉼라피’, ‘아이 쉼키 멀티 테라피’ 또는 ‘아이 쉼키 멀티 쉼라피’ 등으로 9음절로 호칭되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SILK’가 ‘비단, 견사’ 등의 의미가 있고 ‘THERAPY’는 ‘치료, 요법’ 등의 뜻이 있어 ‘비단결 같은 머릿

결로 만들어주는 요법’ 등의 관념이 있으나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확인대상표장 역시 ‘SILKY’와 ‘THERAPY’ 부분이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며 나머지 부분도 식별력이 미약하여, 양 표장 모두 특별히 대비할 만한 관념이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012. 2 |



발명특허를 보신 후 가장 좋았던 내용과 개선해야 할 내용을 적어서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더 나은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면에 게재되신 분에게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위 문제의 정답을 적어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독자의견을 적어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추천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서)을 보내드립니다.



▶ 정답 보내실 곳  
eldaa7@kipa.org

## QUIZ

1. 천연두를 예방할 목적으로 백신을 인체의 피부에 접종하는 것은?
2. 독일의 정치가로,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지도자이자 나치 독일의 총통이었던 사람은?
3. 철강왕으로 부를 쌓은 카네기가 자신이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교육과 문화사업에 전념하여 설립한 것은?

※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천을 통해 「발명특허」 추천도서에 소개된 책을 책으로 보내드립니다.

### 독자의견

- ▶ **임경희 독자** \_ 성장하는 조직의 비밀, '학습'에 대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조직의 학습에 관해서 기업별 예시를 다루어 주시면 좋겠네요. 개인별로 하는 학습이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고, 조직에서 개인을 학습시키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도 다루어 주세요.
- ▶ **한혜령 독자** \_ 55쪽 특허 Q&A에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지식들에 관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매달매달 저의 지식이 쌓이는 거 같아요.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하되 일본특허청을 예비심사기관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언어를 일본어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처음 알았어요. 알짜지식 감사요.
- ▶ **강건우 독자** \_ 월간 발명특허는 다른 지재권 책자에 비해 잡지형태로 발간 되서, 쉽게 읽을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칼럼 글을 특히,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 1월호 퀴즈 정답

1. 루이 파스퇴르
2. 라돔
3. 일반상대성이론

## 퀴즈 정답자

**임경희**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한혜령** 경북 김천시 신음동  
**강건우**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 등록제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웹하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존의 신고만 하면 되던 것을 등록을 해야하도록 되었다. 이는 웹하드 사업의 낮은 진입장벽에 의해서 불법복제가 만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고 웹하드 사업을 하기 위한 자에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이 현 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서 생활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컴퓨터를 통해서 각종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웹하드나 P2P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서 많은 저작물이 지금도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웹하드와 P2P는 저작권법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면서,<sup>1)</sup>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웹하드와 P2P 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동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sup>2)</sup> 또한, 자본금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 30조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도 면제

<sup>3)</sup>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낮은 정도의 진입규제로 인해서 음란물이나 불법저작물을 유통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웹하드나 P2P 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고, 이를 경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등록 취소를 받은 사업자의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위해 법개정

을 하였다.<sup>4)</sup>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주요내용**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0656호, 2011. 5.19,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 ②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③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 규정,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 취소, ⑤ 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등록 취소, ⑥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영한 경우 벌칙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이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 정의규정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3호를 신설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다. 특수

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①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② 그 밖에 타인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sup>5)</sup>를 저장·전송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고 규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등록**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제2조 제13호에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정의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은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였다. 이

1) 저작권법 제104조에서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7-24호에서 ①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②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예시 :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③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예시 :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④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여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정하고 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5)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다만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해야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즉,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③ 재무건전성, ④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결격사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2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즉, 제27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이었던 자는 제22조 제2항에 의해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 과태료 처분 및 등록취소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는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추가에 따라 제27조 제2항 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를 명하거나”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명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고”를 “신고 또는 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5호, 제6호를 신설하였다. 즉, 제2호에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호를 「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한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하였다.

### 벌칙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는 벌칙을 정하고 있는데, 제3의2를 추가하여 제22조 제2항에 다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 경과조치

부칙으로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에 관해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2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자는 이 법 시행일인 2011년 11월 20일 후 6개월 이내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중 등록사항 주요내용**

**개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절차 및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2011년 8월 23일 ~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10월 29일 심의의결하였다.<sup>6)</sup>

먼저 시행령 제29조에서 기존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신청에 관한 세부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제2항에서는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서와 함께 정관, 법률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이용자 보호계획서, 납입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다. 또한 제6항을 신설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접수 후 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하였고, 제8항을 신설하여 법률에서 정한 등록요건(기술적 조치계획, 인력 및 물적 시설, 재무건전성,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등)의 세부내용을 별표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30조의2 등록결격사유를 신설하여 법 제22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화하였으며,<sup>7)</sup> 제65조 제2호의2를 신설하여 웹하드 또는 P2P 사업의 등록 및 등록조건 부과, 변경등록, 폐지명령, 등록취소 등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였으며, 제7호 중 폐지명령을 폐지명령,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취소로 개정하였다.

**등록요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에서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은 별표2의2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요건 중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해당 광고에 청소년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같은 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정보를 인식하고 그 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지침 중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적용할 것, 두 번째,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에 따른 악성프로그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하면서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저장·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셋째,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기술적 조치로 ①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일 것, ② 해당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할 것, ③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복제·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이라는 기준에 맞



6)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1년 제57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 2011. 10. 19, 2면.

7) 제30조의2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①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본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나 ②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 적용되는 것일 것, 넷째, 저작물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에 게시되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다섯째, 저장·전송된 저작물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의 목록(전송자 식별 정보 포함),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서버 로그파일 등)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이다.

### 인력 및 물적 시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요건 중 인력 및 물적 시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의 저작권 보호 책임자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 및 공표할 것. 다만, 각 책임자는 겸임할 수 있다. 둘째, 24시간 2명 이상의 불법정보·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 및 이용자 보호 전담요원을 두고 하루 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수 4,000건당 1명의 전담 직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 셋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을 갖출 것이다.

### 재무건전성 및 사업계획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요건 중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서는 납입자본금(개인인 경우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3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서는 인원·시설 등 일반 현황, 사업개요, 사업추진 방향(전략), 매출방안,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할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 이용자보호계획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요건 중 이용자보호계획서는 ①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② 저작권 위반 시 처리 지침 및 권리자 보상 절차 마련 및 이행계획, ③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 접수 및 처리계획, ④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

획, ⑤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명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명시, 불법 복제물 복제자·전송자



에 대한 제재 규정과 상습적인 침해자 등에 관한 적절한 처리절차, 제재 내용, 소요기간, 제재 대상자 자료 보관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 약관의 제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그리고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웹하드 등록제에 대한 의견

### 긍정적 측면

그간 웹하드 서비스 등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와 통신판매업자 신고만으로 사이트 개설이 가능하고, 자본금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신고절차마저 면제해 주는 등 진입 장벽이 과도하게 낮았다. 이에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저작물 유통시장에 악영향을 끼쳐왔는데, 웹하드등록제가 현실화되면 단기적으로 현행 저작권 보호 단속의 집행력이 강화되어 사후단속 한계에 따른 사전적 예방 조치가 가능하며, 사이트 개설 당시 등록 여부를 심사할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무건전성과 청소년유해물 등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 등을 파악하고 불법 정보 유통이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이용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콘텐츠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불법 콘텐츠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면서 합법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시켜 창작자

들의 창작 의욕을 돋우어 줌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한다. 결국 웹하드 등록제는 콘텐츠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sup>8)</sup>는 것이다.

### 부정적 측면

웹하드 등록제에 대한 부정적 측면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첫째,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로,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는 본인 확인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문제<sup>9)</sup>와 이용자의 식별 정보를 포함한 로그 기록이 2년 이상 보관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및 남용으로 인한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sup>10)</sup>

둘째, 모니터링 의무화와 관련된 문제이다. 시행령 개정안 별표2의2에서 24시간 2명 이상의 불법정보·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 및 이용자 보호 전담요원을 두게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모니터링 의무화'나 다름없으며, 사업자에게 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면,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표현과 소통을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는 실무적 측면에서도, 법적인 책임의 측면에서도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sup>11)</sup>이 있으며, 현행 저작권법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sup>12)</sup>

셋째, 위임입법의 한계초과의 문제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사업자에게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별표2의2를 통해 사실상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있는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104조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등록 요건에 '기술적 조치의 실시 계획'을 밝히도록 함으로써 사

실상 저작권법 제104조의 요건을 무력화할 우려도 크다고 한다.<sup>13)</sup>

넷째, 과도하게 상세한 규제에 의한 창의적 서비스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다.<sup>14)</sup> 최근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웹하드와 비슷한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모든 인터넷 사이트가 등록제로 변하는 우려까지 표명하는 의견이 있으며,<sup>15)16)</sup> 특히, 웹하드 등이 외국의 사이트를 통해서 이용될 수 있는데 외국이 마찬가지로의 등록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 효율성은 현저히 저하된다는 지적도 있다.<sup>17)</sup>

다섯째,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이다. 즉, 불법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8) 진성호, "웹하드 등록제의 기본 개념과 긍정적 역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1, 1~2면.  
 9) 오병일,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1, 1면.  
 10) 로그 기록의 보관은 서비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이상 보관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정부는 필요 이상으로 로그 기록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로그 기록을 보관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신원 확인 정보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오병일,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1, 1면).  
 11) 지금까지 인터넷 내용규제 및 저작권 규제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표현이나 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무화한 규정은 없었고, 이것이 현재까지의 사회적 합의였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또한 별도의 법적 근거도 없이 단지 시행령 상의 별표 규정에 의해 사실상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된다(오병일,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1, 2면).  
 12)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웹하드나 P2P사이트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기술적 조치란 불법전송을 검색,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제재는 모호하고 게다가 충분하지 않다. 과대료를 부과하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 요건이 판단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박익환, "저작권법 측면에서 본 웹하드 등록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1, 2면).  
 13) 오병일,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1, 3면.  
 14) 오병일,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1, 3면.

도 풍선효과로 인한 폐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sup>18)</sup> 또한 콘텐츠의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웹하드 사이트 등에 대한 등록제는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불법을 하지 말라는 경고에 불과하며 새로운 유형의 불법만 조성할 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고 한다.<sup>19)</sup>



## 마치며

웹하드 등록제는 웹하드 및 P2P 사업자가 범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불법저작물을 유통시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불법저작물의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웹하드 등을 사전에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제도적 취지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에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였다. 그런데 살펴본 것과 같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나 로그파일 보관에 따른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와 더불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의 문제, 24시간 2인 이상의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모니터링을 의무화 시키는 문제,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의 모니터링 의무를 시행령 및 별표에서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 초과

및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결국 웹하드 등록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불법저작물의 유통근절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는 새롭게 재조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sup>20)</sup> 또한 웹하드, P2P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해당 규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균형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2. 2 |

- 15) 웹하드 사업자를 등록제로 단속하겠다는 것은 언론통제의 목적으로 온라인 사업자의 허가제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가 없으며, 포털사이트 등 일반 OSP들도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 또는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부분 웹하드와 비슷한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등록제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된 일반 OSP들이 모두 포함된 인터넷 전체 사이트를 전부 등록제로 바꾸는 조류의 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 인터넷 산업이 전부 통제될 우려가 크다고 한다(이재성, "웹하드 등록제, 문제는 없는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1, 2면).
- 16) 오병일,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1, 3면에서도 "다양한 부가통신서비스 중 유독 'P2P와 웹하드' 서비스만 등록제로 전환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지 (저작권 침해나 음란물 등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이는 P2P나 웹하드에 고유한 문제도 아니며, 모든 P2P나 웹하드 서비스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문입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 17) 박익환, "저작권법 측면에서 본 웹하드 등록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1, 1면.
- 18) 불법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되는 한 콘텐츠의 불법유통에 대한 근본적 정화는 어려운 환경임을 인정한다면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한 폐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업로더들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판을 돌아다니며 시간이나 다운로드 횟수를 미리 정해놓고 콘텐츠를 내려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온라인 '덧다방' 등의 변칙도 손쉽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마트폰 등 콘텐츠 유통환경의 급변, P2P와 웹하드의 사용에서 토렌트 사용자 환경의 변화와 괴리감이 있는 제도라는 지적이다(이재성, "웹하드 등록제, 문제는 없는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1, 2면).
- 19) 박익환, "저작권법 측면에서 본 웹하드 등록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1, 1면.
- 20) 이현희,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 등록제", ZOOM IN,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1, 4면.



# Information

세계는 지금 \_ 세계 지식재산권 동향 소식

KIPO NEWS \_ 특허청 소식

KIPA NEWS \_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건강하게 삽시다 \_ 아프고 시린 냉증, 건강의 적신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물

# Information

# 세계는 지금

## 미국 Barak Obama 대통령, 무역관련 정부부처 통합 제안서 발표

지난 1월 13일, 미국 Barak Obama 대통령은 무역관련 6개 정부부처 통합 제안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국제무역 및 경제 분야의 6개 정부부처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다.

6개 통합대상 부처는 상무부의 핵심 비즈니스 및 무역부(core business and trade functions),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미국 무역대표부(USTR), 수출입은행, 해외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미국 무역개발청(US Trade and Development Agency)이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속해 있는 상무부도 포함되어 있으나, USPTO는 향후 이와 같은 통합안이 특허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공식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해당 개편 목록대상에 저작권청은 포함되지 않다.

백악관에 따르면 USPTO는 특허 업무를 포함한 비즈니스 관련 전반의 모든 활동에 대한 윈스톱 장소로 개편에 영향을 받을 예정이다.

Obama 대통령은 6개 정부부처 및

기관을 단일 웹사이트, 대표전화로 가진 한 개의 부처로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새로 탄생되는 신규 부처는 미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한 가지 임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기업들은 아이디어 생산부터 특허출원, 수출준비, 신규시장 개척 등 모든 비즈니스 과정에서 신규 부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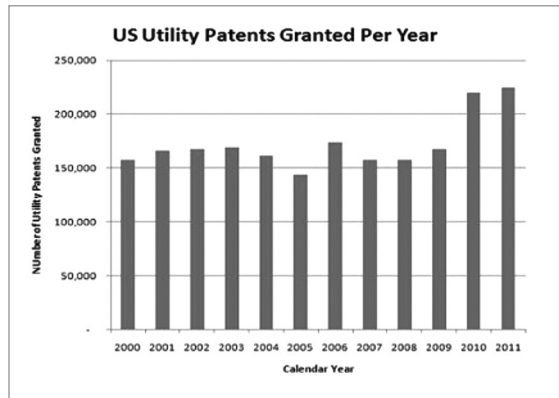
백악관은 오랜 기간 정부부처 간의 중복업무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정부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비효율적이었음을 지적하며 이번 통합안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중소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임을 강조하였다.

출처 <http://www.ip-watch.org>

## 미국 특허상표청, 2011년 실용특허 현황

지난 1월 5일, 미국 특허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2011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실용특허건수를 집계하

〈2000~2011년 미국 실용특허건수〉



였다.

2011년 실용특허건수는 약 225,000건으로 2010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수치이며, 역대 최대의 실용특허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지난 2006년, 실용특허건수는 173,000건임)

〈허여 건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2010년과 2011년에 실용특허 출원건수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전체 출원건수 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이 임명된 이후의 USPTO 체제 변화에 따른 것이다.

출처 <http://www.patentlyo.com>

## 일본 특허청, ASEAN 국가의 지식재산제도 정비를 위한 지원 계획

일본 특허청(JPO)은 2012년 내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서 일본 기업이 국제특허를 신속히 출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

올해 2월, 도쿄에서 개최될 ASEAN 국가의 특허청장 회의에서 ASEAN 각국 정부로부터 국제특허출원에 필요한 사전조사 업무 수탁 및 특허심사의 노하우 제공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목적이며,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 등을 방지할 수 있다.

JPO는 출원인이 ASEAN 국가에서 PCT에 근거한 국제특허를 출원할 때, 출원 내용이 특허에 적합한지 조사하는 국제조사 업무를 수탁할 예정이다. 우선 2012년 내에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서의 국제특허출원에서 국제조사를 수탁하고, 향후에는 ASEAN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로도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JPO는 이러한 정책이 해외 진출 기업들의 특허심사 기간 단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특허심사의 노하우도 제공할 방침이다.

향후 5년 간 ASEAN 국가의 특허청에서 총 100명 정도의 직원을 연수생으로 일본에 초대하고, 특허,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관한 국제협정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거나 특허심사 시스템의 IT화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일본에서 ASEAN 국가로 진출한 기업이 현지에서 개발한 기술이나 생산 노하우 등을 국제특허출원하는 경우, 현지 정부의 체제 미정비로 심사기간이 지체되어 결과적으로 국제특허 취득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아, 기술 유출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출처 <http://www.nikkei.com>

## 일본 특허청, 2011년 개정 특허법 해설서 공표

지난 1월 12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1년 법률 개정(법률 제63호) 해설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였다.

본 해설서는 JPO 공업소유권제도개정심의실에서 편집한 것으로, 일본 발명협회가 「2011년 특허법 등의 일부 개정 : 산업재산권법의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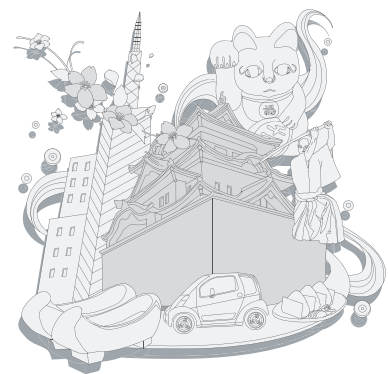
〈해설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장	통상실시권 등 대항 제도의 재검토
제2장	모인출원 등과 관련된 구제조치의 정비
제3장	심결취소소송 제기 후 정정 심판의 청구 금지
제4장	재심 소송 등에서 주장의 제한
제5장	심결의 확정 범위 등과 관련된 규정의 정비
제6장	무효 심판의 확정 심결의 재삼자효과 폐지
제7장	요금 재검토
제8장	특허료 등의 감면과 관련된 법령 재검토
제9장	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 등의 재검토
제10장	출원인·특허권자의 구제 절차 재검토
제11장	상표권 소멸 후 1년 간 타인의 등록배제 규정 폐지

\* 2011년 개정 특허법 해설

[http://www.jpo.go.jp/shiryou/hourei/kakokai/tokkyo\\_kaisei23\\_63.htm](http://www.jpo.go.jp/shiryou/hourei/kakokai/tokkyo_kaisei23_63.htm)

출처 <http://www.jpo.go.jp>



## 유럽 특허청, 2011년 지식재산 출원 현황 발표

지난 1월 17일, 유럽 특허청(EPO)은 2011년 지식재산 출원 현황을 발표하였다.

# 세계는 지금

EPO는 2011년에 243,000건의 출원을 접수했으며, 이는 2010년 대비 3%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특허출원은 62,115건으로 2010년 대비 7% 증가하였다.

출원의 지역적 분포는 다음과 같으며, 최근의 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2011년 출원의 62%가 비유럽권이 차지함(2010년은 61%)
- 세계적으로 아시아권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유럽권은 사실상 변동이 없으며, 미국은 2010년 26%에서 2% 감소함
- 반면 중국은 5%에서 7%로, 일본은 18%에서 19%로 각각 증가함

유럽권 국가 중에서는 독일이 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프랑스(5%), 스위스(3%), 영국(3%), 네덜란드(3%) 순으로 나타났다.(개발도상국이 상당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인도 3.1%, 러시아 26.2%, 브라질 11.3%임)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국제적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R&D 투자가 늘어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특허출원의 꾸준한 증가와 비유럽권의 높은 출원율은 유럽의 기업환경이 우수함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며, EPO

가 국제 특허시스템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위의 수치는 예상수치(preliminary figures)이며, EPO는 오는 3월에 구체적인 자료를 발표할 예정임〉

출처 <http://www.epo.org>

## 유럽 특허청, 경제 및 과학 자문위원회 설치 발표

지난 1월 13일, 유럽 특허청(EPO)은 중요한 특허 관련 경제적·사회적 이슈들을 보다 선별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경제 및 과학 자문위원회(Economic and Scientific Advisory Board)」를 설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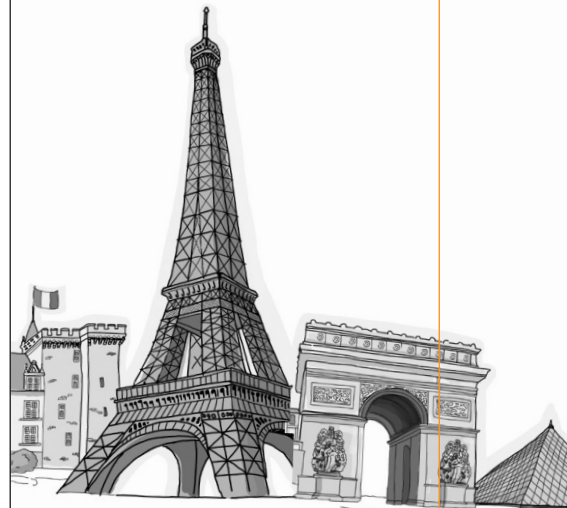
EPO는 검색, 심사 및 특허허여의 핵심 산업을 넘어, 특허 제도의 광범위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특히 혁신과 경제 성장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가 연구수행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 결과의 평가 및 그 이행을 위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위원회는 EPO 및 협력 기관들에 의한 연구 및 분석 결과들을 활용하여 민감한 이슈들에 대하여 사전 대응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정책권고안 등을 마련할 것이다.

위원회는 EPO의 수석경제분석관의 조력을 통해 유럽, 아시아 및 미국의 특허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3년이다.

출처 <http://www.epo.org>



## 중국 해관총서, 2011년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발표

지난 1월 11일,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는 2011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현황과 주요 사건에 대해 발표하였다.

해관총서는 2011년 지식재산 침해 혐의로 약 1만 7천 건의 화물을 압수하였

으며, 그 중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품은 약 1,800만 개로 전체의 약 19%를 차지하였다.

2011년 해관총서에 등록된 지식재산 보호 물품목록은 3,532건이며, 이 중 중국인이 신청한 보호 물품목록은 1,684건으로 전체의 약 47.6%를 차지하였다.

이우(义乌)해관은 세네갈로 수출하는 화물에서 이우시의 현지 브랜드 「DATA」 상표권을 침해한 에너지절약형 전구를 적발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이우시의 기업이 해관총서에 지식재산 보호를 신청한 건수는 약 110건으로 2009년과 비교하여 300% 증가하였다.

이 외에도 우시(无锡)시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도와 독일세관에 요청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태양에너지 전지부품이 보관된 2개의 컨테이너를 압수하였으며, 압수물품의 금액은 약 290만 위안에 달한다.

독일세관에서 압수한 물품의 샘플을 중국 공안기관에서 양도받아 중국 내에서 위조품을 제조한 기업을 형사처벌하는 증거품으로 활용한다.

해관총서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러시아, 일본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의 관세당국과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출처 <http://www.sipo.gov.cn>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차스닥 상장기업 지식재산권 정보공개 강화계획

지난 1월 12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는 차스닥 상장기업의 지식재산권 정보공개에 대하여 강화할 계획이다. 차스닥 상장기업 연도보고서의 작성 및 정보공개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준칙을 개정하면서 지식재산권 정보 공개를 강조하고 있다.

증감회는 최근 「증권공개발행기업의 정보공개내용과 형식준칙 제30호 : 차스닥 상장기업 연도보고서의 내용과 형식(公开发行证券的公司信息披露内容与格式准则第30号-创业板上市公司年度报告的内容与格式)(2011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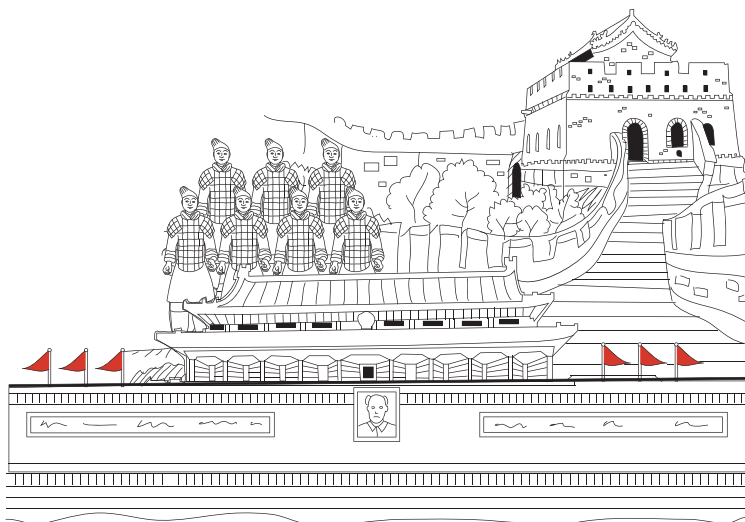
정-의견 수렴고)」에 대해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번 개정에 차스닥 상장기업은 특허, 상표, 비특허기술(非专利技术) 등 무형 자산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공개하고, 이에 따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차스닥 상장 기업은 특허, 비특허기술 등 핵심 경쟁능력에서 중요 변화 및 기업에 발생한 영향을 분석·설명하고 이로 인하여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 및 기업이 취하는 조치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출처 <http://www.sipo.gov.cn>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 KIPO NEWS

## 해외진출 전 반드시 체크 하세요, 지재권보호 가이드북

특허청은 5개국(네덜란드, 러시아, 멕시코, 싱가포르, 홍콩) 지재권보호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로스쿨, 대사관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고, 아시아 최초로 EU·미국과 동시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은 우리 경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수록 외국 기업과의 지재권분쟁으로 인해 입는 피해 역시 증대 추세에 있어 외국 현지에서의 지재권 관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이 외국 현지에서 지재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재권보호 가이드북을 '0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국가별로 제작해왔다.

지재권보호 가이드북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현지에서 지재권을 확

보하는데 필요한 요건·절차·대리인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재권으로 인한 분쟁 및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지재권 비전문가인 기업 담당자도 스스로 문제를 관리할 수 있게 다른 기업의 사례·노하우 등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지재권 관리 매뉴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제공 정보〉

1. 국가 현황 및 지재권 관련 통계
2. 지재권 제도 체계
3. 지재권 취득·관리 방안
4. 지재권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
5. 기타 지재권 관련 정보(법률대리인, 수수료, 유관기관 등)

한편, 지재권보호 가이드북은 기존에 오프라인 책자나 국제지재권분쟁 정보포털(www.ipnavi.or.kr)에서만 제공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국제지재권분쟁 정보포털, 안드로이드 마켓, 아이튠즈에서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어디에서나, 어

떤 기기로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FTA 체결국, 수출 상위국 등을 중심으로 지재권보호 가이드북을 확충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특허청, 취약계층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에 한발 다가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2년부터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활지원이나 생활보조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장애인 교육의 한계를 넘어, 스스로 독립하여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사회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최근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

〈지재권보호 가이드북 발간 현황('06~'11, 총 21권)〉

'06 (3권)	'07 (2권)	'08 (4권)	'09 (6권)	'10 (1권)	'11 (5권)
대만 말레이시아 러시아	터키 브라질	영국 인도 칠레 남아공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태국 베트남	UAE	네덜란드 러시아(개정) 싱가폴 홍콩 멕시코

히, 장애인 대부분이 후천적 장애로 경제활동을 경험한 상태여서, 장애를 극복하고 노력하면 누구나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이며, 특히 지식재산 활동의 경우 신체적으로는 활동역량이 미흡하나 지적능력면에서는 전혀 떨어지지 않는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기업, 학교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고급인력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장애인들의 경제여건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은 기업 현장을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특수학교 교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나눔 발명교육,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교양 강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올해의 발명왕, 월계관은 누구에게?

특허청은 혁신적인 발명을 통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뛰어난 공적을 세운 이들을 추천받아, 올해의 발명왕 1인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1998년부터 매년 최우수

발명가 한 명을 발명대왕으로 선발하여 추대해오다, 2011년부터 '올해의 발명왕'으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발명분야의 노벨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올해의 발명왕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최고의 발명인을 선발하는 것으로서 그 상징성이 크다.

올해의 발명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발명인을 선정하는 만큼, 올해의 발명왕에게는 월계관, 상금 3,000만 원과 함께 동반자 1인을 포함한 해외 연수의 기회가 주어지며, 특허청 발명인의 전당에 그 공적이 전시된다.

아울러 특허청 정책자문위원이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명예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등 발명 분야 멘토로서의 기회도 주어진다.

올해의 발명왕에 대한 시상은 오는 5월 17일(목)에 개최되는 제47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발명유공자에 대한 각종 표창 수여와 함께 실시된다.

올해의 발명왕은 추천을 통해 접수를 받는데, 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 학회와 협회, 지역지식센터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접수 기한은 1월 30일(월)부터 3월 12일(월)까지이며, 추천은 한국발명진흥회(<http://www.kipa.org>) 발명진흥팀\*에서 받는다.

\* Tel : 02-3459-2842, 2848.

E-mail : khs3044@kipa.org

올해의 발명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042-481-5322)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02-3459-279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세계적 경기침체 불구, 국내 특허·상표출원 증가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2008, 2009년 감소하였던 국내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연속 증가하였다.

특허청이 2011년 출원현황을 잠정 분석한 결과, 특허청에 접수된 산업재산권 출원은 총 372,121건으로 2010년 349,273건 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별로 보면, 특허출원이 179,687건으로 2010년 대비 5.6% 증가하였고, 상표출원은 124,000건으로 14.3%

# KIPO NEWS

증가하였다.

실용신안의 경우는 선등록제도 및 이중출원제도 폐지 등의 영향으로 출원이 13.1% 감소하였고, 디자인출원은 1.2%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특허 및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기업들이 R&D 등 미래지향적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한 결과로 보인다.

특허출원 현황을 주체별로 보면, 대기업이 26.4%(47,409건)로 가장 많고, 개인 23.6%(42,500건), 외국법인 22.5%(40,452건), 중소기업 15%(26,983건)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특허출원은 최근 2년 연속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지난해 1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 대기업 : '09년(41,824건, △16.1%), '10년 (45,658건 , 9.2%), '11년 (47,409건, 3.8%)  
중소기업 : '09년(31,883건, 10.3%), '10년 (32,558건 , 2.1%), '11년 (26,983건, △17.1%)

한편, 외국 개인 및 법인의 특허출원은 전년대비 각각 10.1% (969건→

1,067건), 8.4%(37,327건→40,452건)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최다출원 기업은 삼성전자(5,588건)이고, 그 뒤를 엘지전자(3,096건), 현대자동차(2,740건)가 따랐다. 외국기업은 퀄컴(1,351건), 소니(517건), 도요엘렉트론(437건) 순이며, 국가별로는 일본(15,556건), 미국(12,252건), 독일(3,647건), 프랑스(1,776건) 순으로 나타났다.



## “백화점업, 슈퍼마켓업”도 서비스업 명칭으로 등록한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백화점업, 슈퍼마켓업 등 종합소매업 명칭도 서비스업 명칭으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 등은 서비스업 명칭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이 업체들이 서비스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에 “○○소매업, ××소매업” 등과 같이 일일이 상품을 열거하여 다수의 서비스업을 기재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경우, 백화점 등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열거해야 하므로 이러한 서비스업의 기재 건수가 수천 개 혹은 수만 개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출원은 물론 등록 후 서비스표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기재했던 일부 서비스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등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허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거래계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이들 종합소매 서비스업의 명칭을 서비스표 출원 시 지정 가능한 서비스업 명칭으로 인정해서 “백화점업” 등 명칭 자체에 대하여 서비스표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업 분류체계를 개편하였다.

이번 개편으로 종합소매업의 명칭을 그대로 서비스업 명칭으로 기재하여 서비스표로 등록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 제고는 물론, 관련 서비스표 등록출원의 활성화로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공 특허청



## 발명특허인 신년인사회 개최

주요 인사 등 180여명 참석, 새로운 각오 다짐

○ 리회는 새해를 맞이하여 발명특허가족의 단합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 지난 1월 18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2012년 발명특허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이수원 특허청장,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전임 특허청장을 비롯한 발명 유관기관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 KIPA NEWS



## 우리회,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 체결식 가져

우리회 최종협 부회장과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현수 단장은 지난 1월 10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양 기관의 체결식을 통해 우리회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대해 상호협력할 방침이다.



## 설 명절 어려운 이웃, 사랑실천 나누기



우리회 최종협 KIPA 사회봉사단장 최부회장은 지난 1월 27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천사의 집을 방문,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우리회는 서로 돕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명절 때마다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최 부회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우리회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입니다”고 말했다.

2007년 4월에 발족한 ‘KIPA 사회봉사단’은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비전을 품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아프고 시린 냉증, 건강의 적신호

“발 끝이 시리고 저려 잠을 잘 때에도 양말을 신고 자요.” 겨울의 끝자락에 있는 2월에도 냉증의 대표적 증세인 수족냉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냉증은 겨울철에 심해지고, 한여름에도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를 괴롭힌다. 이번 호에는 냉증의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추**운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손과 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온몸이 으슬으슬 시린 증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한의원을 찾고 있다. 냉증은 추운 날씨 탓도 있지만 따뜻한 곳에서도 증상이 가라앉지 않고, 한 여름에도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게 특징이다. 냉증은 손발의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요통과 현기증, 자궁질환 등이 생길 수 있으며 쉽게 피로해진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 몸이 차가우면 건강이 위협받는다

항온동물은 체온이 항상 일정한 범위로 유지된다. 혈액이 체내 구석구석까지 흐르기 때문이다. 특정 원인에 의해 인체 특정부위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경우 열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 부분

김소형  
한의학 박사



의 체온이 떨어지면서 냉증을 호소하게 된다.

냉증은 여름에도 손발이 차게 느껴지는 수족냉증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손발이 차다 못해 괴롭도록 시려 컨디션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몸 속의 과도한 냉기는 피부 건강에도 해롭다. 피부가 차갑게 굳어 있어 기혈순환은 물론 영양과 수분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건성피부처럼 거칠고 푸석 푸석해진다. 또한 몸이 냉해지면 인체의 신진대사가 잘 이뤄지지 않고 기초대사율도 떨어져 칼로리 섭취량이 적더라도 먹은 음식이 쉽게 지방으로 쌓이게 된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온도에 민감하여 많은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냉증으로 인한 질병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냉증은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비정상적인 냉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자궁질환이 생기기도 한다. 남성의 경우 냉증은 스태미너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가 냉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여겨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어혈(瘀血, 나쁜 피)이나 수분대사 장애로 인한 습과 담(濕, 痰)으로 저리고 둔해지는 등의 말초혈관장애를 겪을 수 있다. 또 이 같은 장애로 인해 냉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여 냉증이 있는 부위에 부종이 생기거나 하면 저혈압과 만성피로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

냉증의 주 원인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찬 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겨울철에 증상이 더욱 심해지지만, 나쁜 생활습관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현대인들은 불규칙한 생활습관이나 운동부족, 잦은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짧은 스커트를 즐겨 입는데, 이런 경우 찬 기운에 노출되어 하복부의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냉증이 심

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몸에 딱 붙는 레깅스나 스키니진, 롱부츠 등도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과도한 스트레스 역시 혈행을 나쁘게 한다.

### 냉증을 다스리는 방법

몸이 냉한 사람은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요즘은 한 겨울에도 무의식적으로 아이스크림이나 청량 음료 등의 찬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몸 안에 냉기를 생성하는 주범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인스턴트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도 몸 속의 냉기를 가중시키므로 가급적 삼가는 게 좋다.

찬 음식 대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한방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생강차는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다 혈액순환을 도와 추위를 덜 타게 하며, 감기를 예방하고, 소화기능을 도와준다. 계피차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며 특히 몸이 허해 추위를 잘 타는 사람에게 좋다. 인삼차는 원기를 보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몸이 차고 추위를 잘 타며 쉽게 피로를 느끼는 사람에게 좋다.

더불어 너무 짧고 몸에 딱 끼는 옷은 피하는 게 좋다. 갈수록 타이트하고 길이가 짧은 옷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입어서 예뻐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사이 몸은 차가워지고 병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

유산소 운동이나 족욕, 반신욕의 목욕법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습관처럼 실천하도록 하자. 특히 족욕이나 반신욕은 한의학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체 상태라 하는 두한족열 상태를 만들어주는데, 머리는 차가워지고 발은 따뜻하게 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특히 냉기가 해소될 뿐 아니라 하체가 붓는 증상, 물렁살, 피로 회복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냉기 해소에 도움이 되는 혈 자리를 톱툰이 지압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발바닥을 구부렸을 때 ‘人(사람인)’자 모양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인 용천혈은 신장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냉증에 도움이 된다.

불규칙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다. 스트레스가 냉증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혈관이 수축하여 일시적으로 체온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2012. 2 |

### 〈TIP〉 냉증 자가진단법

1. 아랫배나 손발이 항상 차갑다.
2. 얼굴빛이 창백하거나 누렇다.
3. 갑자기 상열감(上熱感)이 생기고 화끈 달아오른다.
4. 에어컨을 싫어한다.
5. 금방 숨이 차고 체력이 딸린다.
6. 늘 피로하며,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움, 소변이 잦다.
7. 여름에도 긴팔을 입는다.
8. 요통, 생리통이 심하다.
9. 생리불순, 비정상적인 냉대하 증상이 심하다.
10. 감정의 기복이 크다.

※ 위의 증상 중 4개 이상이면 냉증에 해당하므로 참고 바란다.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물

### # Muju 전라북도



#### 무주천마

한약재로만 귀하게 이용되었던 천마는 하늘에서 떨어져 마비되는 증상을 치료하였다고 하여 하늘이라는 뜻의 “천”과 마목의 “마”를 합하여 천마라고 불리게 되었다.



| 상표명 |  
무주천마

| 권리자 |  
무주천마생산자 영농조합법인

| 등록번호 |  
제 43호

| 상품분류 |  
제 31류 천마(신선한 것)

연락처  
무주천마생산자 영농조합법인  
063-323-1218



#### 1/ 유래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주군은 지리적으로 신라와 백제에 속하였으며, 당시 신라에서 유행하던 민간 교역품으로 인삼이나 천마를 비롯한 각종 약재 및 금·은·동 공예품, 금·은 그릇 등이 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천마는 삼국시대에 무주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추측할 수 있다.

#### 2/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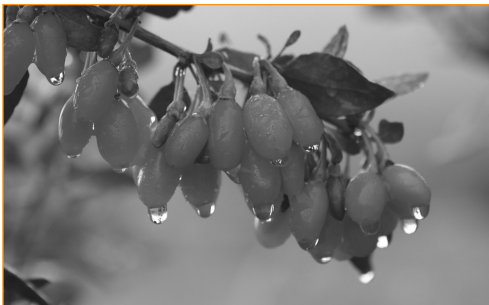
정풍초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던 천마는 신경쇠약, 현기증, 두통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왔지만, 최근까지 인공재배가 불가능하였고 자연 산출량도 적어서, 한약재로만 귀하게 이용되었을 뿐 대중화가 되진 못했었는데 무주에서 93년 천마재배에 성공하여, 현재는 국내 최대의 천마 생산지가 되었다. 무주천마는 기온이 서늘하고 고랭지지역의 특성으로 생육이 튼실하고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및 인체 내 항암성분으로 알려진 페놀성분의 함량이 많은 특성이 있다.

## # Cheongyang 충청남도



### 청양구기자

전국 최초로 구기자 재배를 시작했던 청양은 현재 전국 구기자 생산량의 70% 이상이 청양에서 생산되고 있고 청양구기자는 중국에서도 으뜸으로 인정하는 최고 상품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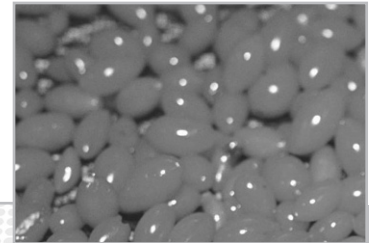
| 상표명 |  
청양구기자

| 권리자 |  
청양구기자 생산자영농조합법인

| 등록번호 |  
제 25호

| 상품분류 |  
제 29류 건조된 구기자,  
보존처리된 구기자

**연락처**  
청양구기자 생산자영농조합법인  
041-943-6999



#### 1/ 유래

농촌에서는 야생 구기자 열매가 익으면 겨우 한두 근정도 따서 말려 모았다가 팔아 쓰곤 했었는데 생업과 산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약 70년 전 청양군 목면에서 제일 먼저 구기자를 재배한 박관용 씨의 의지에 결과라고 전해지고 있다. 박관용 씨는 구기자 재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몇 번의 시험재배 끝에 마침내 성공하여 당시 농촌에는 상당수 높은 소득을 올리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더욱 발전시켜 현재는 중국에서도 인정하는 청양의 특산물이 되었다.

#### 2/ 특성

청양구기자는 다수확하는 것이 특징인데 다수확이 가능한 것은 청양의 구기자 재배농민들의 오랜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한 적심다수확재배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양구기자는 중국에서도 으뜸으로 인정하는 최고 상품품으로 청양은 청정구기자의 명산지로 알려졌다.

# 월간 「발명특허」 광고게재 안내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원고모집안내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기획·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 「발명특허」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모집분야 :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 발명칼럼, 판례 등
- 원고제목 : 관련 분야별로 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 제한없음
- 모집시기 : 수시
- 보내실곳(E-mail) : eldaah7@kipa.org

## 회원 동정 접수

2009년 9월부터 【회원동정】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회원동향」란에 실을 수 있는 회원사의 동정과 보도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분량 : A4(1/2매, 글자크기 : 12포인트), 관련 사진자료 1매 함께 제출 (보도자료 형태도 무관함)
- 보내실곳 : eldaah7@kipa.org



## 광고 및 원고 모집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전략기획팀 TEL (02)3459-2726

광고가격(1개월 기준)

광고게재면	규격	가격	비고
표지 4	칼라 전면	900,000	부가세 별도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내지 확보	"	500,000	
내지 흑백	흑백 전면	300,000	

## 우리회 지회 안내

지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소	연락처
부산지회	박성용	김유현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954-3841
강원지회	김윤호	김현웅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8-25	033-258-6580
전북지부	-	정승원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515-1	063-471-1284

편집 : 전략기획팀 김민국 (Tel. 02-3459-2726, Fax. 02-3459-2729)

"아이디어가 선풍타격이  
되어 드립니다."

기업과 종업원의 win-win.

# 직무발명제도

기업의 미래를 바꿉니다.

## ▶ 직무발명제도란?

- 종업원(발명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 기업은 직무발명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나요?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유발하고, 기업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와 기술 축적 및 이윤창출로 인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 ▶ 직무발명제도는 어떻게 도입 하나요?

-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내용을 기업과 종업원이 합의 하여 기업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정하면 됩니다.

##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이, 근로자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
-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직무발명 도입기업에 대하여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찾아가는 직무발명 제도 설명회**」를 무료로 개최하고 있으니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직무발명제도 열람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http://www.kipo.go.kr))의 특허마당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http://www.kipa.org))의 사업안내

## ■ 직무발명제도 관련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042-481-5373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5





## 국가녹색기술대상, LS산전 우리나라가 한 눈에 반한 녹색기술이래요

많고 많은 녹색기술 중에  
우리나라가 훌쩍 반해버린 녹색기술은 무엇일까요?  
바로 LS산전의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신 성장동력 기술의 맨 앞에 선  
사람과 환경을 위한 첨단 녹색기술  
LS산전은 이미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 LS산전, 제2회 국가녹색기술대상 대통령상 수상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은 에너지 사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탄소배출량, 시간대별 요금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사용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효율적인 전력 에너지 사용은 발전소 건설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을 크게 저감시켜 친환경 녹색사회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지구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를 매년 500만 톤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무 9억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국내 최고의 녹색기술입니다**

**국가녹색기술대상이란?** 2년 내 상용화된 기술 중에 최고의 녹색기술을 선정하는 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하여 시상